2019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방위사업청

DAPA GO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머리말

PREFACE

방위사업청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무기체계 개발은 물론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로서 방산 분야 참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방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수출 및 경영 지원, 정책자금 등 분야별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9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는 중소·중견기업이 방산육성 지원사업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개조개발,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수출 성공 사례 등 지원 사업별 우수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 사항을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도와주는 방산수출진흥센터의 신설과 기업에 직접 찾아가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DAPA-GO 서비스를 함께 수록하여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방산 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경우 절충교역 가치를 대기업의 2배로 인정하는 가치승수 확대와 국내 업체와 협력한 실적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전 가치축적제도Banking 도입과 관련한 주요 개선 내용들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기업들이 보다 쉽게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이 안내서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내서가 기업인 여러분들이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하는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방위사업청장 왕 정 홍

목차
CONTENTS

제1절 수출지원 정책

01 | 방산수출 추진 절차 ····· 010
02 | 방산수출진흥센터 운영 ····· 016
03 | 현장 밀착형 지원 서비스 다파고(DAPA-GO) ····· 019
04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 022
05 | 방산수출 허가 제도 ····· 030
06 | 중소기업 절충교역 참여 지원 ····· 034
07 | 기술료 면제 및 감면 제도 ····· 040
08 | DQ마크 인증제도 ····· 042

제2절 해외시장 개척 지원

09 |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 050
10 | 해외입찰 및 수출시장 정보 제공 ····· 054
11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운영 ····· 058

제3절 기술개발 지원

12 | 국방벤처 지원사업 ····· 062
13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066
14 | 핵심 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 074
15 | 핵심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 ····· 078
16 |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 ····· 084
17 | 민 · 군 기술협력 사업 ····· 088
18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부품 국산화) ····· 094
19 | 국방연구시설 · 장비 정보서비스(DRES) 구축 ····· 098
20 | 국방과학기술 이전 제도 ····· 102
21 | 민간 개발 무기체계 시험평가 지원 제도 ····· 106

제 4 절
금융 · 경영 · 기술보호 지원

22 | 방산육성자금 지원사업 ····· 112
23 | 국방중소기업 경영정책자금 지원사업 ····· 116
24 |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120
25 | 방산 전문 인력 양성 지원사업 ····· 124
26 | 방산 기술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 128
27 | 방산 중소 · 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 132

제 5 절
방위사업 정보공개

28 | 국방규격 공개 ····· 138
29 | 국방규격 개정 ····· 142
30 | 기술 자료 및 견본 지원 제도 ····· 144
31 | 군수품 목록화 교육 지원 ····· 148

제 6 절
방산 원가 및 계약 분야

32 | 국방조달 참여 지원 ····· 154
33 | 방산계약 제도 ····· 164
34 | 방산원가 제도 ····· 170

제 7 절
방산업체 지원정책

35 |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제도 ····· 176
36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 182
37 | 일반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 ····· 186
38 |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제도 ····· 190
39 |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운용 제도 ····· 194

목차
CONTENTS

참고

01 | 핵심 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과제 제안 요청서(RFP) ····· 201
02 |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RFP) ····· 219
03 |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성장 및 개발계획서 ····· 251
04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개조개발계획서 ····· 291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방위사업청이 함께 하겠습니다.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

2019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제 1 절 |

수출지원 정책

제 1 절

수출지원 정책

01 방산수출 추진 절차

1. 방산수출 추진 절차란?

해외 주요 방산수출 대상 국가를 상대로 정보 수집, 군수공동위 개최, 현지 시장 개척, 대사관 방문 등을 통해 '방산물자 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추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방산물자 등'이란?

- 방산물자
-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
  1. 무기체계
  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 허가 대상 전략물자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 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 · 고시한 물자

※ 방위사업법 제38조(자금융자)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자금융자)

국방과학기술이란?

-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 · 제조 · 가동 · 개량 · 개조 · 시험 · 측정 등을 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 포함)

전략물자란?

- 전략물자는 무기 뿐 아니라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품목으로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3에 규정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로 규정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44조 (방산물자 등의 수출 지원)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8조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2. 방산수출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출 추진 일반절차
1단계 (준비)	**마케팅활동 및 수요 파악(정보 수집)** • 시장 개척단 파견, 홍보매체(군사잡지 등)를 활용한 마케팅 • 방산 전시회 부스(단독, 중소기업관) 참가 * 주요방산물자 전시회 참여시 견본 수출 허가 필요 • 해외정보원 활용 • 방산 · 군수 공동위 **방산제품 개조 · 개발 추진(필요 시)**
2단계 (입찰/협상)	**국제입찰 참가 신청 / 승인** (* 주요방산물자인 경우) ▶ **국제입찰 참가** ▶ **우선협상 선정** **방산제품 홍보 및 성능시험 지원** (방산전시회 참가 / 방산 · 군수공동위 참가 / 시장 개척단 파견 / 대사관 방문 등)
3단계 (계약)	**계약 체결** ▶ **수출 허가** (* 주요방산 물자인 경우 사전 예비승인 필요) ▶ **납품** (수락시험 後) ▶ **군수 지원 후속조치** **계약체결 관련 구매국 요구사항 지원** (품질보증/시험평가, 기술료감면, 교육훈련, 절충교역, 정부간 계약 등)

- 수출 예비승인 · 국제입찰 참가승인 · 수출 허가 : 기술심사과
- 주요방산물자 : 견본수출 허가 · 국제입찰 참가 · 수출예비승인 필요

※ 실제 수출추진 절차는 구매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세부 지원 내용

■ 수요 파악(정보 수집) 지원

해외 및 국내 방산전시회, 해외정보원, 방산군수 협력 공동위원회, 방산협회 간 세미나 등을 통해 상대국 획득사업 정보를 입수합니다.

정보 수집 방법	지원내용
방산전시회 참가	• 국내 · 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외국 획득 관계자(정부 및 군 당국 관계자, 현지 에이전트 등) 면담 등
해외정보원 활용	• 대사관, 재외 무관부, KOTRA 등을 통해 정보 입수 후 업체 전달
방산 · 군수 공동위 참가	• 상대국 획득사업 정보 입수 후 업체 전달 • 방진회를 통해 공동위 의제제출 공문 접수 후 자사제품 홍보 의제 제출
시장 개척단 참가	• 방진회, 업체, 대사관 등과 대표단을 구성하여 주요 획득인사 면담 · 제품 소개 · 세미나를 통한 구매국 수요파악

■ 전략 수립 및 제품 홍보 지원

-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홍보를 진행합니다.
  - 해외 및 국내 방산전시회 참가
    * 전시회 참가지원 참조
  -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주요 인사 및 방산업체 면담
  - 방산업체 및 협회관련 세미나 참석
-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참가 및 제품홍보 의제 제출
  - 시장 개척 대표단에 참가하여 구매국 주요 인사 면담 · 제품소개
  - 재외공관, 해외무관을 활용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 계약 체결 지원

- 구매국들이 자국 내 방산물자의 안정적 구매를 위한 정부 간 계약 체결을 요구 시 청이 구매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업체를 중개하거나 KOTRA를 통해 정부 간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 정부 대 정부 간 판매제도는 구매국들이 꾸준히 요청해오던 교역 방식으로 방위사업청은 우리 실정에 맞고 실현 가능한 제도를 위해 법적 · 제도적 검토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구 분	지원내용
정부 간 중개	• 방위사업청이 구매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업체를 추천 청-구매국 간 협약 체결 → 업체 추천 → 수출 계약 체결(구매국-업체)
정부 간 거래	• KOTRA가 국매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 업체 선정 → KOTRA와 업체 간 계약 → 수출 계약 체결(구매국-KOTRA)

* '방산물자 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09. 11. 10.)
*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KOTRA 내에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 설치('09. 10. 15.)

- 구매국 정부로부터의 기술 이전, 대응 구매 및 산업협력 등 반대 급부로 요구받는 절충교역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납품 및 후속군수 지원

-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운영 · 유지를 위한 군수물자, 군수시설, 군수인력 등을 지원합니다.

*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제도 참조

■ 부대 실사 및 국내 · 외 시험평가 지원

- 구매국 요청 시 우리 군과 협력하여 군수품 대여를 통한 해외 현지 시험평가와 우리 군의 운용 부대 현장 실사를 지원합니다.
-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민간 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의 경우 구매국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국내 성능 시험을 지원합니다.

4. 방산 · 군수 MOU · 공동위 체결 국가 현황

지역	방산 · 군수협력 양해각서 및 조약체결 국가	비고
아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9개국
대양주	호주	1개국
중동	이스라엘,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4개국
유럽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네덜란드, 터키,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체코, 핀란드, 헝가리	17개국
북미	미국, 캐나다	2개국
남미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럼비아	5개국
아프리카	보츠와나	1개국

5. 자주 묻는 질문

Q_ 해외 방산시장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어디에 요청하면 되나요?

A_ D4B(www.d4b.go.kr)를 통해 해외입찰정보 및 해외 방산시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 정보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수시 전파

Q_ 해외 정부의 구매수요를 알기위해 무관 등의 협조가 가능한가요?

A_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무관을 통해 협조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담당과를 통해 요청

Q_ 방산 · 군수공동위 및 시장 개척단 파견 관련 연간일정을 알 수 있나요?

A_ 연간 일정표는 없고 나라별 개략적인 일정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위 개최 및 시장 개척단 파견 일정은 유동적인 부분이 많아 지역 담당과를 통해 관심 국가별 일정을 확인

문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2079 - 6366
방위사업청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 02) 2079 - 6424
방위사업청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02) 2079 - 6581

MEMO

02 방산수출진흥센터 운영

1. 방산수출진흥센터는?

방산수출 지원 전담창구로서 행정절차, 각종 지원사업 등 수출업체의 애로 사항을 일괄 · 신속하게 도와주는 원스톱 지원 센터입니다.

방산수출진흥센터 주요 업무

- 수출 허가, 절충교역, 기술 이전 등 방산수출 원스톱 업무처리
- 수출 금융, 중소기업 지원 등 타기관 연계 업무지원
- 방산수출입 지원시스템(D4B)을 통한 기업의 온 · 오프라인 정보 제공
- 현장 밀착형 수출업체 지원 다파고(DAPA-GO) 서비스 실시
-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2. 센터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접수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공문 접수,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
- **처리 기한 :** 7일 이내

■ 센터 업무 처리 절차

- 민원 접수 시 지원센터가 수출 관련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처리
  * 관계 기관 : ① 청내 관련부서, ② ADD · 기품원 · KOTRA · 수출입은행 · 무역보험공사, ③ 각군, ④ 산업부 · 국방부 · 외교부 · 중기부 등
- 요청 사항에 대한 기관 간 쟁점, 정책판단 사항 등은 단계별 협의체를 통해 의사결정(Top-Down)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 처리(7일 이내 중간 상황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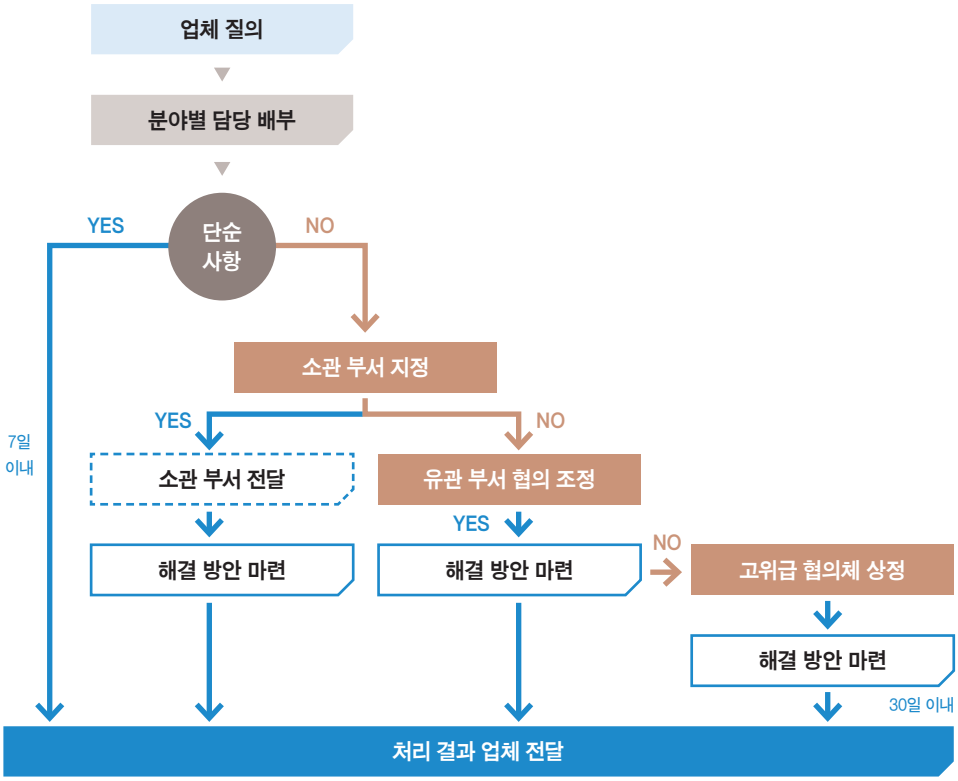

▲ 18. 11. 19. 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식

3. 자주 묻는 질문

Q_ 방산수출진흥센터 운영 취지는 무엇인가요?

A_ 수출기업이 여러 기관에 발품을 팔 필요가 없도록 각종 지원과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조치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기존	개선
기관별 **개별 접촉**으로 장시간 소요	전담창구를 통한 **원스톱 처리 및 기한내 답변**
부서간 쟁점, 정책판단 필요 등 애로	**고위급 협의체와 연계**하여 현안 조정기능 강화
단순 상담, 안내	**수출 허가, 절충교역, 기술 이전** 등 **복합수요 해소**
기업의 접근 어려움	기업의 온 · 오프라인 **접근 편의성 증진**

Q_ 센터 방문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_ 기업이 수출 관련 현안을 요청하시고, 센터를 방문하시면 방위사업청 내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방산수출진흥센터 연락처
전화 상담 : 02-2079-1100~1105
방문 상담 : 과천청사 4동 1층(구.고객안내센터)

03 현장 밀착형 지원서비스 다파고(DAPA-GO)

1. 다파고(DAPA-GO)란?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GO

방위산업을 개방적 ·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직접 찾아가는 수출 상담" 입니다.

다파고(DAPA-GO)

- **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 업계의 애로 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 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2. 다파고(DAPA-GO) 업무 지원 절차

- **언제** : 매주
- **누가** : 방위사업청장, 국제협력관 등 주요 간부
- **무엇을** : 방산수출 관련 업체와 상시 · 현장 소통을 통한 수출 상담

3. 자주 묻는 질문

Q_ 다파고(DAPA-GO) 운영 취지는 무엇인가요?

A_ ①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제기하기 어려운 개별 기업의 민감한 현안 또는 애로 ·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② 기업에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Q_ 다파고(DAPA-GO) 방문 요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A_ 방산수출진흥센터는 항상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산수출진흥센터에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Q_ 다파고(DAPA-GO) 시 업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_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간담회 가운데 수출 관련 제도개선 또는 애로 ·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7일 이내에 조치 사항 또는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방산수출진흥센터 연락처

- 전화 상담 : 02-2079-1100~1105
- 방문 상담 : 과천청사 4동 1층(구.고객안내센터)

MEMO

04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이란?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내수용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개발된 우수 무기체계의 신속한 개조/개량 및 업체 주도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무기체계 분류 기준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 및 별표2에 따름

■ 관련 규정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 지원 규모

- **'19년 예산 :** 200억 원('18년 22.4억 대비 약 9배 증가)

■ 지원 대상

- **대상 과제 :** 수출용 개조를 위한 무기체계 연구개발로 아래 요건을 충족
  - 국내 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 정부가 주관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체계 개발 중이거나 체계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 **대상 기업 :**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중 아래 요건 충족 기업
  - 해당 무기 체계의 국내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 상기 업체와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국내 계약 체결 실적은 없으나, 해당 무기체계의 체계 개발 업체
  - 국내 계약 체결 실적은 없으나, 방산업체로 추가 지정된 업체
  - 국내 계약 체결 실적은 없으나, 해당 무기체계의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CHECK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

1. 주관기업 신청자격 및 신청 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이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구분	개발 기간 · 지원한도	정부지원	비고
보조금 지원	최대 3년 지원 3년 간 최대 100억 원	75% 이내	보조금과 방산육성자금 중 택 1
방산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지원한도 및 출연 비중 없음)		

- 중소기업 우대(지원 비율 75%, 현금 부담 비율 10% 이상)
  - 대기업(지원 비율 50%, 현금 부담 비율 15% 이상)
  - 중견기업(지원 비율 60%, 현금 부담 비율 13% 이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원비율은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사업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바랍니다.
- 개발 성공 시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중 택일하여 기술료 징수
  - 방위사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0조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사업 공고** : '19. 3월(예정)
- **접수 기간** : 공고 후 30일
- **제출 장소** :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 부품개발규격팀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 **제출 서류**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등

  * 세부 서류목록은 관련 규정 참조
- **세부 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 한국방위산업진흥회(www.kdia.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hp.sbc.or.kr)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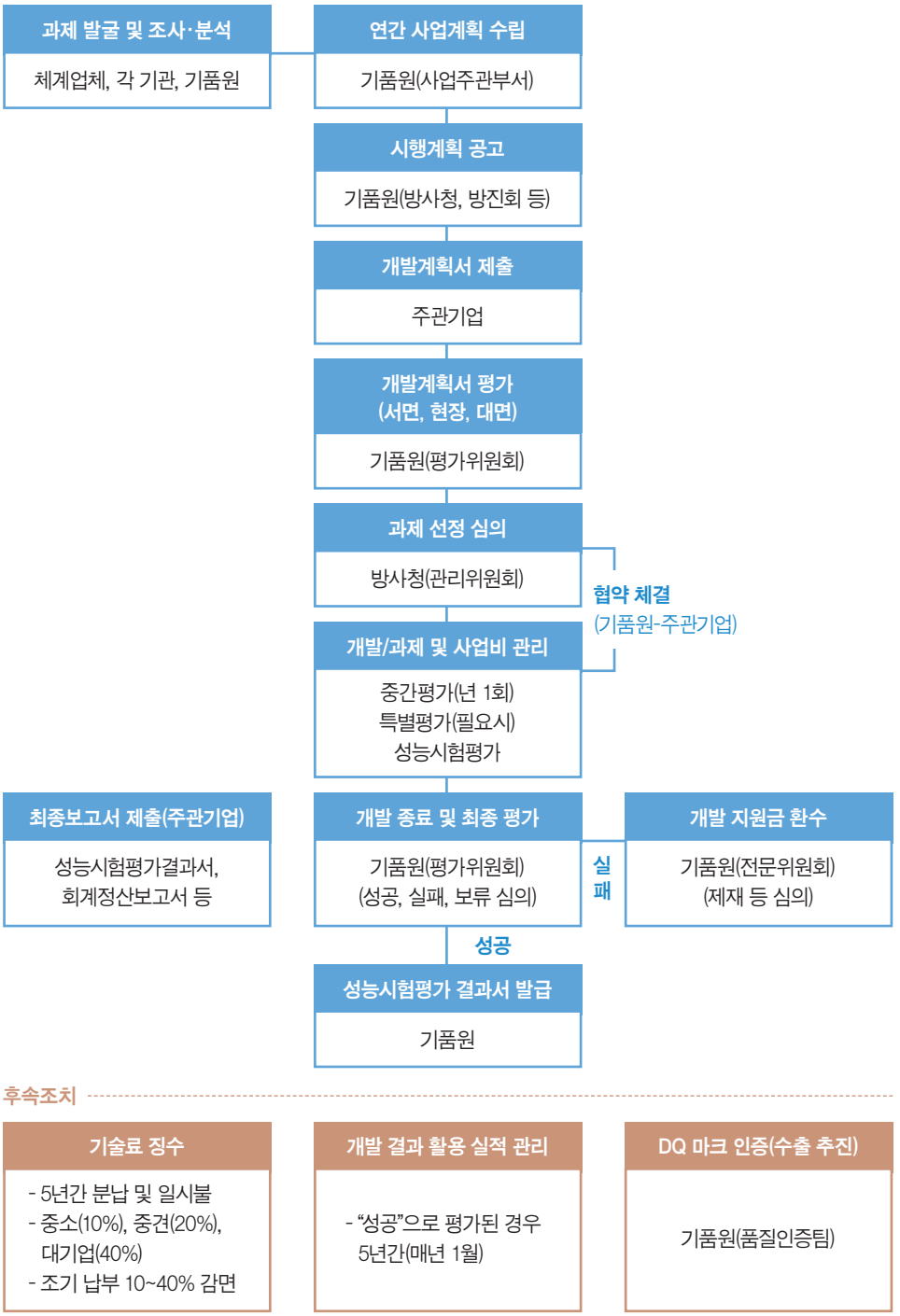
과제 발굴 및 조사·분석
체계업체, 각 기관, 기품원
연간 사업계획 수립
기품원(사업주관부서)
시행계획 공고
기품원(방사청, 방진회 등)
개발계획서 제출
주관기업
개발계획서 평가
(서면, 현장, 대면)
기품원(평가위원회)
과제 선정 심의
방사청(관리위원회)
협약 체결
(기품원-주관기업)
개발/과제 및 사업비 관리
중간평가(년 1회)
특별평가(필요시)
성능시험평가
최종보고서 제출(주관기업)
성능시험평가결과서,
회계정산보고서 등
개발 종료 및 최종 평가
기품원(평가위원회)
(성공, 실패, 보류 심의)
실패
개발 지원금 환수
기품원(전문위원회)
(제재 등 심의)
성공
성능시험평가 결과서 발급
기품원
후속조치
기술료 징수
- 5년간 분납 및 일시불
- 중소(10%), 중견(20%),
대기업(40%)
- 조기 납부 10~40% 감면
개발 결과 활용 실적 관리
-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5년간(매년 1월)
DQ 마크 인증(수출 추진)
기품원(품질인증팀)

■ 사업 일정

3월~4월	5월	6월	7월	10월
공고 (신청 · 접수)	선정 평가	선정 및 협약	사업 착수	진도 관리 (현장 점검)

- 중소기업 과제 우선선정(1차) 후 대 · 중견기업 / 대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컨소시엄 과제 선정(2차)
  - 1 · 2차 선정을 위한 공고 및 과제 접수는 동시 진행
  - 1차 선정평가(5월 초) → 1차 선정 과제 협약(6월 초)
    2차 선정평가(5월 말) → 2차 선정 과제 협약(6월 말) 예정

3. 성공 우수 사례

■ 소화기 야간표적지시기 수출 성공

- **과제명 :** ㈜유텍 / 소화기 야간 표적지시기
- **보조 금액 :** 1.41억 원
- 인도네시아(경찰청) 수출

- 개인화기에 장착하는 소화기 야간표적지시기의 사거리 증대
- 조준 용이를 위한 빔발사각 최소화
- 조준 용이를 위한 무게 경량화

■ KM732 근접신관 수출 성공

- **과제명 :** ㈜한화 / KM732 근접신관
- **보조 금액 :** 6.77억 원
- 이라크 수출

- 근접센서 성능 향상(CW방식 → FMCW방식)
- 전자파방해 대응 능력 향상으로 정밀타격 강화

4. 자주 묻는 질문

Q_ 보조금과 이차보전을 위한 개발 승인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_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동일 과제에 대해서는 보조금 또는 이차보전을 위한 개발 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Q_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_ 방위사업청(국과연 포함) 또는 국방부(직할부대 · 직할기관 포함)나 육 · 해 · 공군과의 무기체계 조달계약 실적이 모두 포함됩니다.

∵ 다만, 국내 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없더라도 정부가 주관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체계 개발 중이거나 체계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는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로 인정됩니다.

Q_ 개조개발 신청업체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체계업체와의 무기체계 조달계약 실적도 인정되나요?

A_ 체계업체와의 1차 협력업체의 하도급 조달계약 실적도 인정됩니다.

∵ 체계업체는 해당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실적이 있어야 하며, 협력업체 또한 해당 무기체계와 관련된 하위 구성품(장비)의 납품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2차 협력업체의 경우 신청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2079-6362

국방기술품질원 부품개발규격팀 055) 751-5678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과제 현황('16~'18년)

'16년 : 6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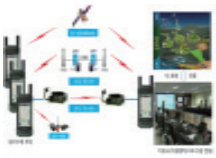

- **위치보고접속장치(현대제이콤)** : 이리듐 상용위성 연동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위치보고 장치로 개조개발

- **대대정찰용 무인항공기(유콘시스템)** : 협소한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수직 이·착륙 기능(VTOL) 추가하는 개조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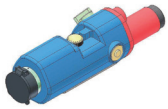

- **전자-광학식 표적지시기(유텍)** : 야간에 적외선레이저를 표적에 조사하여 항공기의 공습을 유도하는 장비로서 광 발산각 최소화, 경량화 등 운용성 향상을 목표로 개조개발

- **열상조준경용 0.8W급 극저온 냉각기(에프에스)** : 0.3W/0.5W급 냉각기를 0.8W급 냉각기로 개조개발

- **대용량 전송체계 마스트(충무정밀)** : 안테나 마스트의 경량화 등 운용성 향상을 목표로 개조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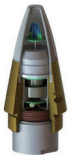

- **127미리 함포탄용 근접신관(풍산FNS)** : 항재밍 특성과 작동신뢰성이 우수한 FMCW방식을 적용하여 개조개발

'17년 : 7개 과제

	• **소형전술차량(기아자동차)** : 기존 차량에 사막 등 연약 지반에서의 차량 구동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를 적용하는 개조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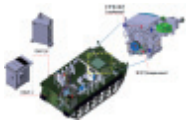	• **30mm 복합대공화기용 냉방장치(케이에스씨)** : 대기온도 35℃에 적합토록 개발된 냉방장치를 대기온도 50℃의 고온 환경에서도 냉방 성능을 발휘하도록 개조개발
	• **40mm함포용 전력변환장치(대원기전)** : 40mm함포에 적용된 전력변환장치의 에너지 저장모듈 개선, 에너지 저장모듈의 내구성 증대, 실시간 감시 기능을 개조개발
	• **해안감시레이더(STX엔진)** : 수상함용 2차원 탐지/항해레이더의 운용주파수, 신호처리 알고리즘, 송신 전력 등을 개선하여 고성능의 육상 고정형 해안/항만 감시 레이더로 개조개발
	• **다기능관측경(한화시스템)** : 무게, 최대 사용시간, 다양한 출력 인터페이스 등의 성능 개선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조개발
	• **복합 대수심 수중탐색음탐기(소나테크)** : 듀얼 운용주파수 적용, 운용수심 및 탐지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임무 영역을 심해로 확장시키는 개조개발
	• **81mm 박격포탄(KM374)(한화)** : 신관 개조 및 공용화, 탄체 및 충전화약 변경 등 성능개량 및 원가 절감을 위한 개조개발

'18년 : 2개

	• **천무 다련장 로켓용 냉방장치(와이지테크놀로지)** : 중동국가에 적합한 냉방용량 증가 및 구조 재설계 등 개조개발
	• **76미리 함포탄용 근접신관(풍산FNS)** : FMCW 방식의 근접신관으로 개조 개발

05 방산수출 허가 제도

1. 방산수출 허가제도란?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전략물자,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허가 업무입니다.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57조 (수출 허가 등)
- 「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물자 고시 및 수출 허가 등)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2. 수출 관련 통제품목

■ 수출 허가 대상품목

구 분	관련 규정
전략물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물품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 고시
방산물자	• 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 보증 등을 위해 지정한 물자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일반 +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 방위사업관리규정 145조의 정의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 수출 허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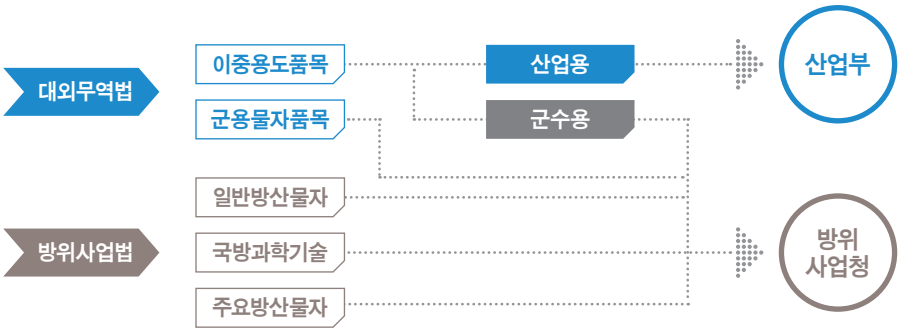

3.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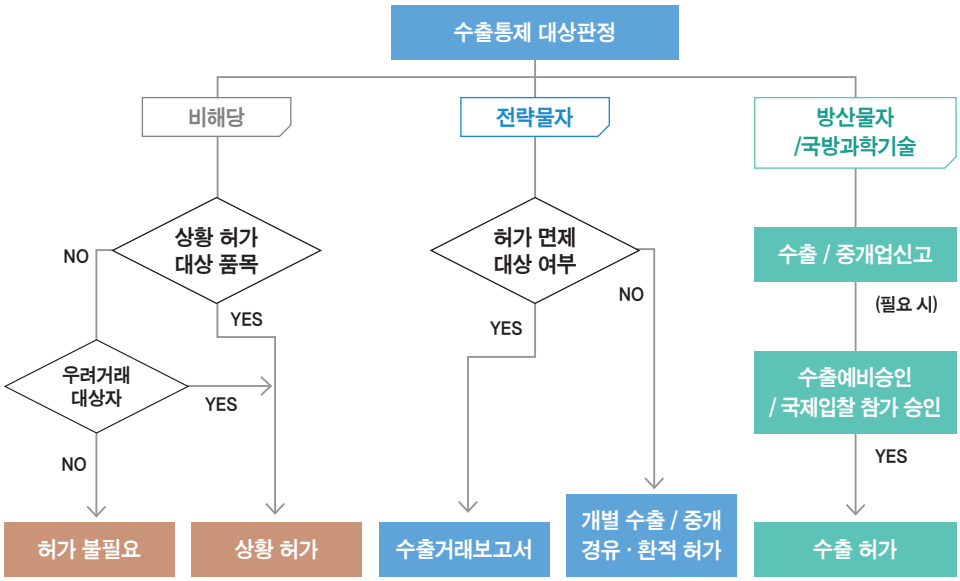

- 심사 기준
  - 수출 허가 대상(방산물자, 군용전략물자 등) 해당 여부
  - 국제평화 및 안전, 국가안보 저해 및 군사 · 외교적 민감성
  - 수입국의 기술 수준 및 품목/기술의 유출 가능성
  - 수입자, 최종 수하인, 최종 사용자 및 사용 목적의 신뢰 여부
  - UN 등 국제체제에서 제재 대상인지 여부 등
- **신청 방법** : 시스템* , 수기 등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 및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www.yestrade.go.kr)

• 수출 허가 첨부 서류

구분	전략물자	방산물자 / 국방과학기술
공통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 등 • 최종사용자 증명서 • 수출 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기타	•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 최종 수하인 진술서 • 최종 사용자의 영업여부 확인 가능한 확인서	• 기술 보유 기관과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서 • 수출 시 외국정부의 허가 필요시 해당 국가의 허가서 • 수출 시 국내외 파급효과 및 납품일정

4. 자주 묻는 질문

Q_ 수출 허가 대상에 따른 허가 기관은 어디인가요?

A_ 수출 허가 기관은 전략물자 및 방산물자와 최종 사용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방산물자의 허가 기관 일원화에 따라 '15.9.28.부로 일반방산물자의 수출 허가도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합니다.

구분	전략물자		방산물자 (일반+주요)	국방과학기술
	이중용도품목	군용물자품목		
허가기관	산업통상자원부(민수용) 방위사업청(군사용)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Q_ 수출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체결했는데, 수출 허가 신청도 계약 건별로 신청해야 하나요?

A_ 반드시 계약 건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수출 허가는 해당되는 수출품의 품목과 수량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계약에 포함된 세부품목과 수량이 일치한다면 여러 계약 건을 통합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Q_ 수출 허가를 받았는데 일부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_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특히 수출 품목, 수량, 금액, 최종 사용자 등의 변경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 수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_ 수출 허가 관련 양식 및 규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_ 청 홈페이지 및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관련 법령(규정)	각종 서식
방산 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법」 제57조/시행령 제68조/시행규칙 제56조 · 제57조 * 청 홈페이지 (www.dapa.go.kr) [업무정책]-[법령]-[방위사업법령]에서 확인 가능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방위사업법」 제5편 제4장 제2절 * 청 홈페이지 (www.dapa.go.kr) [업무정책]-[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www.d4b.go.kr) [회원서비스]-[자료실]-[민원 서식 목록]
군용물자품목	◎「방위사업법」 제5편 제4장 제2절 * 청 홈페이지 (www.dapa.go.kr) [업무정책]-[법령]-[방위사업법령]에서 확인 가능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 [알림/정보마당]-[자료실]-[민원 서식]

※ 수출 허가 관련 법령(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 2079-6831~9

06 중소기업 절충교역 참여 지원

1. 절충교역이란?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일정규모(1천만달러) 이상의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 당사자(해외 방산업체)로부터 부품제작 수출 및 기술 이전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입니다.

절충교역의 유래

1960년대 초반 미국은 군사력을 지원한 비용만큼 미국 무기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현금지불이 서로 "상쇄(Offset)" 되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고가의 군사장비들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외화를 절감하고 향후 독자적인 방위산업 체제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20조(절충교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 「절충교역 지침」 (방위사업청)
-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절충교역 가능분야(추진조건)

방위력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 능력의 확보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추진

2. 절충교역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소기업 가치승수 확대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부품수입)하는 경우는 그 가치를 대 · 중견기업의 2배로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방산업체와 우리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협력선(Global Value Chain) 진입을 지원합니다.

직접 절충교역		간접 절충교역	
대 ·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 · 중견기업	중소기업
1.5	2 → 3	1	1.5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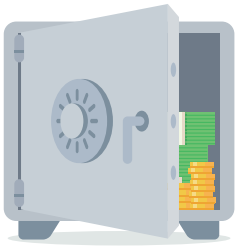

■ 사전 가치축적제도 도입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업체가 국내업체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제작, 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제도인 사전 가치축적제도(Banking)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 외 업체의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방산수출 기회 확대를 지원합니다.

■ 산업협력 쿼터제 도입 예정 (2019년)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해당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 후 도입 예정이고, 절충교역의 명칭도 '산업협력'으로 변경합니다.

3.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방진회 회원사) 대상

절충교역 협상방안 제출 요청
(방사청 → 각 군, 기품원, 국과연, 방진회, 산업부)

↓

절충교역 협상방안 제출 요청, 종합/제출
(방진회 → 회원업체 → 방진회(종합) → 방사청)

↓

절충교역 종합협상방안 검토 의뢰
(방사청 → 사업팀, 국과연, 기품원, 방진회, 산업부)

↓

절충교역 종합협상방안 검토결과 제출
(관련기관 → 방사청)

↓

절충교역 실무회의 개최 및 협상방안 선정
(방사청(절충교역과))

↓

제안요청서 반영
(방사청(절충교역과))

* 국방벤처센터 입주/협약기업의 경우 기품원에서 검토/종합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목록은 별도 홈페이지 (http://offset.gobizkorea.com)에서 확인 가능

■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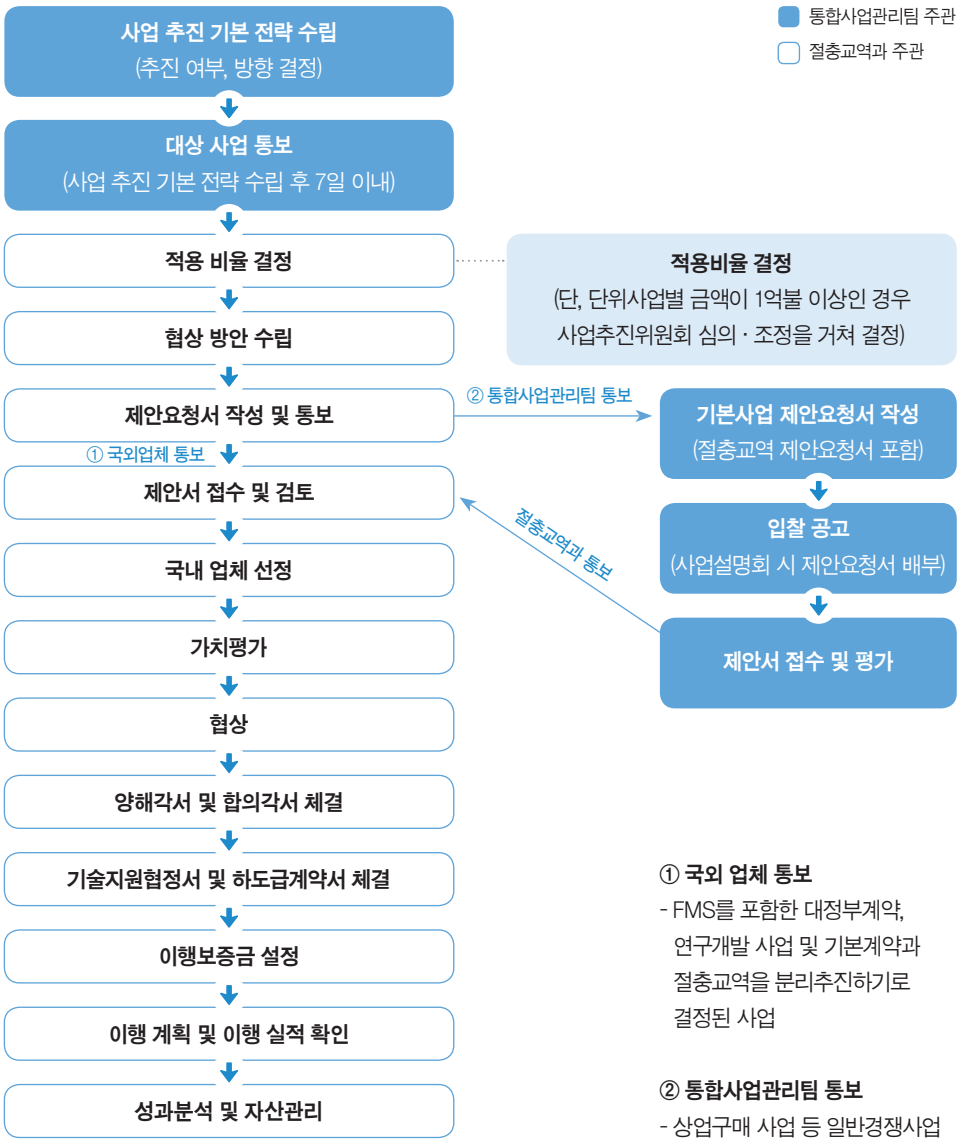

① 국외 업체 통보

- FMS를 포함한 대정부계약, 연구개발 사업 및 기본계약과 절충교역을 분리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

② 통합사업관리팀 통보

- 상업구매 사업 등 일반경쟁사업

3. 자주 묻는 질문

Q_ 중소기업을 위한 절충교역 컨설팅 제도가 있나요 ?

A_ 방위사업청에서는 절충교역을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절충교역 참여 방법, 절차와 협상 방안 작성 Tip 등을 알려드리는 'SmAll Day'라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진회, 기품원을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방진회 : 02-3270-6083, 기품원 : 055-751-5192).

Q_ 국방절충교역 추천 품목이 무엇인가요?

A_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국방 절충교역 품목」으로 선정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대상 품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절충교역품목은 「offset.gobizkorea.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추천 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포함된 ICT 융합, 로봇 응용, 나노융합 및 바이오 등

Q_ 무기체계의 부품 제작 물량을 절충교역을 통하여 국외업체로부터 확보하고 싶습니다. 부품 제작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까지 절충교역으로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_ 설비 및 장비의 제공은 군수 지원 측면에서 소요군 등에 제공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부품 제작에 필요한 전용 치·공구 및 시험장비 등은 절충교역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업체에 제공되는 치·공구 및 시험장비는 국가자산으로 대부 절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 02) 2079-6345, 6355
방위산업진흥회 수출지원팀 02) 3270-6083

MEMO

07 기술료 면제 및 감면 제도

1. 기술료 면제 및 감면 제도란?

수출업체가 국방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기술료를 면제 및 감면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방산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 5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방과학기술료 산정 · 징수방법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기술료 면제사유

- 정부가 사용할 물자를 생산하여 정부에 납품하는 경우
- 연구개발 주관업체 및 협력업체가 해당 연구개발에서 획득한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 수출 상담 또는 국제입찰 참가를 위한 기술 자료에 대해 기술 보유 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기술료 감면 사유 및 규모

- **해당 수출품에 대한 기술료 감면협정 체결** : 협정 내용 적용
- **초기 시장 개척 지원** : 동종 품목의 국내 조달분 대비 수출 물량 비율에 따라 범위별 감면율 누적 적용

수출물량 비율	0~10%	10~20%	20~30%	30~40%	40~50%
감면율	60%	40%	30%	20%	10%

※ 기술 수출 시 구매국 생산물량 포함

- **기술개발 연차에 따른 차등 감면으로 기술의 노후화 반영**

연차	10~20년	20~30년	30년 이상
감면율	10%	30%	50%

※ 기술개발 연차 20년 이상인 군도태장비 수출(물자수출에 한함)의 경우, 전액 감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함)인 경우 : 50%
- 중견기업인 경우 : 25%
- 수출업체가 국내 조달단가 인하를 조건으로 기술료 감면 신청 : 국내 조달단가 인하액 감면
- 정부 · 업체 공동투자 연구개발인 경우 : 업체 투자 비율 감면
- 국방과학기술의 민수 활용 촉진 및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적 감면 필요시 : 일부/전부 감면

2. 지원 절차

3. 자주 묻는 질문

Q_ 복수의 기술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_ 복수의 기술료 감면 사유 해당 시에는 최고액 사유에 한정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_ 기술료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A_ 기술료 감면 신청은 국제입찰참가 또는 수출 예비 승인 또는 기술 이전 승인 신청 시까지 해야 합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02)2079-6394

08 DQ마크 인증제도

1. DQ마크 인증제도란?

방산 분야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Certification)하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44조(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지원 대상

- **대상 기업** : 방산물자 등과 군수품을 수출하고자 기업
- **대상 품목** : 국내 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방산물자 등과 군수품(완제품, 부품 등)으로서 수출용으로 개조 · 개발된 제품 포함

인증 대상 제외 품목

- 최근 2년 이내 중대 하자가 발생한 품목
- 전체 ·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품목
- 구매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 DQ 인증 시 지원 내용

- 절충교역 협상 방안 우선 추천,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우선 지원
- 인증 제품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지원
- 우수 방산 제품으로 영문 홍보사이트 등재

■ DQ마크 활용 및 인증 기간

- 제품, 포장 등에 인증마크 활용(유효기간 3년)
- **유효기간 경과 시** : 재심사를 통해 인증마크 유지 여부 판단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접수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민원 신청
  - 국방기술품질원(인증기관) 국방인증실로 메일 신청
- **제출 서류** : DQ마크 인증 신청서, 대표자 서약서, 기타 신청 서류
- **처리 기간** : 인증 신청에서 심사 완료까지 약 4개월 소요

■ 사업 일정

구분	신청 공고	인증심사	종합심의
상반기	1월	1~6월	3월, 6월
하반기	7월	7~12월	9월, 12월

* 심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인증 신청은 연내 수시 접수

■ 평가 절차

- 공장 심사, 제품 심사, 종합 심사 과정을 통한 인증
  - 업체 규격인 경우 규격의 적합성 등 검증 과정 추가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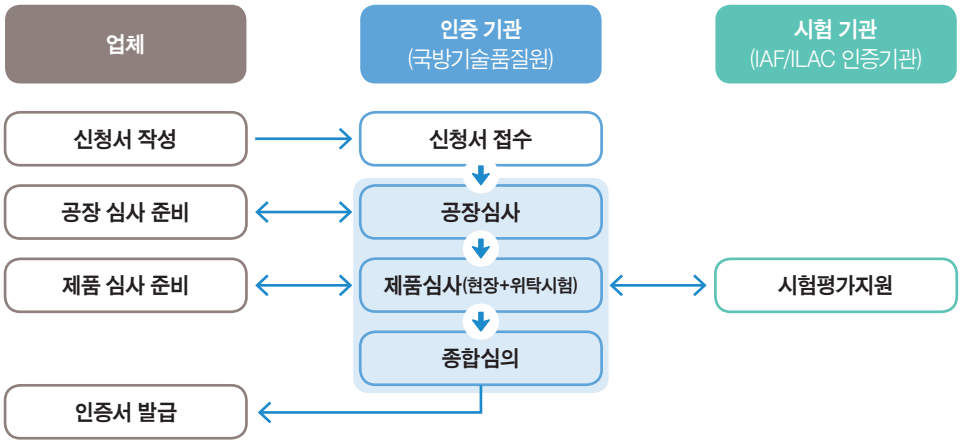

3. DQ마크 인증 제품

2019. 1월 현재 기준

순서	업체명	품목수	인증 제품명
1	연합정밀㈜	4	상호통화기세트 VIC-7DK, 수화기 H-920K, 확성기 LS-454/U, 케이블조립체 CX-510K
2	㈜에이치케이씨	2	방사능측정기 세트(PDR-1K)
			헬멧(전투차량 승무원용)
3	한국씨앤오테크㈜	5	연습용수류탄 K416, K417, K418, CN69
			40mm 연습유탄 CTS-40
4	㈜이오시스템	1	단안형 야간투시경(수출형), NVS
5	삼영이엔씨㈜	1	단파통신체계(URC-300K)
6	㈜트렉스타	1	기능성전투화
7	수성정밀기계㈜	4	자동포구청소기(SB-120(활강용), RB-76, RB-105, RB-155(강선용))
8	㈜참맛	1	즉각취식형 전투식량
9	이화전기공업㈜	1	주파수변환기(30KW)
10	㈜화인	2	고무보트(주입식, 팽창식)
11	㈜코캄	1	리튬폴리머전지팩
12	㈜우남마린	1	특수전용 고속단정
13	㈜기가레인	3	고주파케이블조립체 (A80056103-01, A80056104-01, A80056105-01)
14	소나테크㈜	1	수중탐색음탐기
15	유콘시스템㈜	3	지상제어시스템, 무인기(리모아이-006)
16	선경산업	3	소형정찰용 무인항공기(리모아이 002B)
			식기소독보관함
17	㈜썬테크	2	신발건조기(SK-7100K, SK-71020K)
18	㈜대명	2	발전기(1.5kW, 10KW))

19	샬롬산업㈜	1	주낙하산, 예비낙하산
20	㈜유투에스알	1	전투식량(〃)
21	범한산업㈜	1	열영상관측장비(호크아이 V2)
22	㈜에프에스	2	중압공기압축기(LT-104H)
23	한국특수전지㈜	1	극저온 냉각기(CR-403K),냉각기(CR-405K)
24	㈜대성테크	1	축전지
25	㈜한국서지연구소	1	방탄헬멧
26	컴박스테크놀러지	1	서지보호장치(SL-3408)
27	㈜유텍	1	소화기야간표적지시기(LAD-A1)
28	㈜서한산업	4	여과기조립체, 오일여과기조립체, 유체압력여과기용 부품키트, 여과기부분품 키트부품
29	㈜GES	2	전하감지시스템(PIDS), 광복합감지시스템(APIDS)
30	㈜보고	1	잠수사추진기(DPD200)
31	㈜한화 구미사업장	1	충격신관(HW594A1)
32	에스지생활안전㈜	1	가스입자여과기(KC150)
33	㈜퍼스텍	1	자동소화장치(AFES0001)
34	㈜동인과학	4	광학조준경 (DCL100S, DCL100M, DCL120, DCL401)
35	㈜영안화공	2	화학약품방호용 덧신, 화학방호용 장갑세트
36	㈜테크노와이시스템	2	5.56mm 클리닝 킷(TY-KIT-001), 7.62mm 클리닝 킷(TY-KIT-002)
37	㈜웰크론	1	방탄복(Wel-2018)
38	㈜우성씨텍	2	전투용 안경(WS-MIL-SG-S01B) 조종사용 선글라스(WS-MIL-SG-P03B)
39	㈜리앤케이하이테크	3	순주정현파 인버터 3품목 (DK1210, DK2410, DK2430)
계	**39개사**	**72품목**	

4. 자주 묻는 질문

Q_ DQ마크 인증 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하나요?

A_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민원 신청하거나 인증 기관인 기품원 국방인증실에 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 서류 : 대표자서약서, 제품 및 업체 설명서, 규격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Q_ 업체에서 인증심사를 받을 때, 공장심사-제품심사-종합심의를 다 받아야 하나요?

A_ 신청 업체 및 인증 대상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순서	면제 대상 업체	면제 여부
1	ISO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	공장 심사 면제
2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업체	공장 심사 면제

문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2079-6377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인증실 055) 751-5736

MEMO

2019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제 2 절

해외시장 개척 지원

09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국내업체가 국내 · 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 2019년 17.70억 원

■ **지원 대상**

- **대상 기업 :** 중소/중견기업(방산업체 제외*)
  * 방산업체의 경우 「방산원가 대상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가로 인정
- **대상 품목 :** 방산물자 등

'방산물자 등'이란?

- 방산물자
-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
  1. 무기체계
  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 허가 대상 전략물자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 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 · 고시한 물자

※ 방위사업법 제34조, 제38조의1항4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1

■ **보조금지원 전시회 및 시장 개척 활동**

-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을 인정한 국제방산전시회 및 시장 개척 활동
  - 전년도에 참가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및 수출 성사 가능성 등을 고려 지원 대상 전시회 선정
    * 방산전시회 참가 수요 조사(전년도 7~8월),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 공지(전년도 9월 말)
- 지원전시회 및 신청 서류 등 세부 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18. 10. 01.부)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한국방위산업진흥회(www.kdia.or.kr)

■ 지원 기준

구 분	지원대상(참가형태)	지원항목	지원율	지원한도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주관 협회 또는 단체(중소기업관)	중소기업관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 운송비, 통역비, 홍보물 제작비, 공동 교통비	100%	2억 4천만 원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물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80%	2천만 원
국내 전시회	중소/중견기업 (개별 참가)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물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80%	1천만 원
시장 개척	공동 참가 주관 협회 또는 단체	장소/장비 임차료, 장비 설치비, 전시물 운송비, 통역비, 오/만찬비, 홍보물 제작비, 공동교통비 등	100%	4천만 원

※ 당해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 한도를 조정하여 지급

지급제한

- 방위사업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
- 지침 제7조에 따른 허위 서류제출 및 미제출한 자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정보공시 불성실자 등

■ '18년 지원 실적 : 17.44억 원

- **중소기업관 참가** : 85개社
  * 인도 Defexpo India 등 11개 전시회
- **개별 참가 지원** : 해외 전시회 13개社, 국내 전시회 12개社

2. 업무 절차

■ 전시회 참가 신청 · 접수

- **접수 기간** : 전시회 참가 90일 전
- **신청 방법** : 방위산업진흥회 경유 방위사업청에 신청
- **제출 서류** : 전시회 참가 신청서 및 계획서 등

■ 보조금 지급 신청

- **지급 신청 기간** : 참가 종료 후 20일 내
- **신청 방법** : 방위산업진흥회 경유 방위사업청에 신청
- **제출 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참가 결과 보고서 등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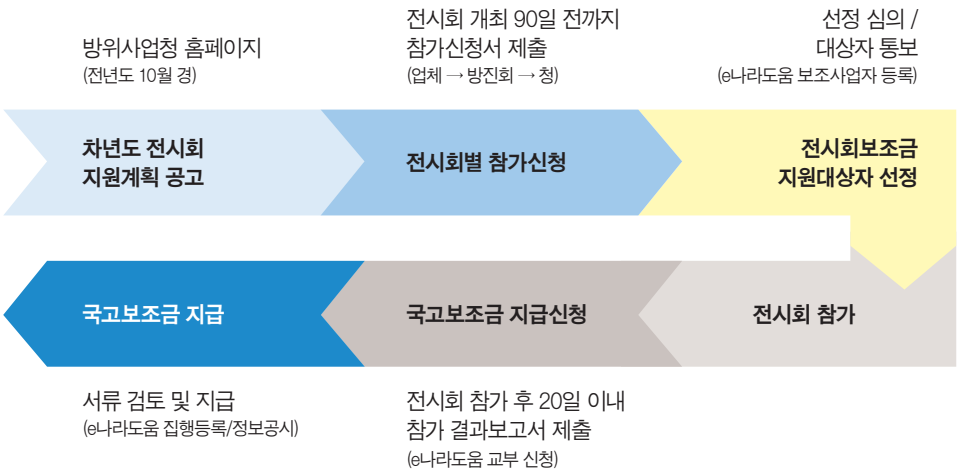

3. 2019년 중소기업관 참가 일정

개최국	전시회명	기간	전시품목
인도	Aero India	02.12~02.16	항공
UAE	IDEX	02.17~02.21	방산/항공
터키	IDEF	04.30~05.03	육/해/공
프랑스	Paris Air Show	06.17~06.23	항공
영국	DSEI	09.10~09.13	방산/보안
미국	AUSA	10.14~10.16	육군
태국	Defense & Security	11.18~11.21	방산/보안
UAE	Dubai Airshow	11.17~11.21	항공

4. 자주 묻는 질문

Q_ 방산업체는 전시회 참가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

A_ 방산물자는 전시회 참가비를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_ 전시회 참가 횟수에 제한은 없나요?

A_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에 대한 지원 횟수는 기업별 연 2회, 동일 계열사 내 기업은 연 4회(개열사 내 기업의 지원 횟수 누계)입니다.

Q_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조사업자 등록을 꼭 하여야 하나요?

A1_ e나라도움은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全 처리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금 중복 ·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입니다.

A2_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 또는 개인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익년도 4월 말까지 정보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e나라도움 단계별 절차

(참가 기업) 회원가입	→	보조사업자 등록	→	교부신청서 제출 /집행 등록	→	정산 관리/정보공시 (천만 원 이상 수급자)
(사업 담당자) 수행 기관 등록	→	사업 등록 접수 및 확정	→	교부결정 · 통보 /집행 정산	→	정산 점검 /정보공시 확정

Q_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A_ e나라도움 사용자 매뉴얼 제공 및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과정명** : (비예치형) ⑩ 보조사업자 사업 · 교부신청 과정(오전)
  (비예치형) ⑪ 집행 · 정산 관리 과정(오후)
- **교육비** : 무료
- **교육 기간** : '19년 1월 ~ 12월까지(매월 선착순)
- **교육 장소** : 한국재정정보원 17층 전산교육장(서울역 인근)
- **교육 신청** : e나라도움 홈페이지(메인 화면 오른편 교육 신청)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www.gosims.go.kr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 문의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진흥센터 02) 2079-1105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해외사업팀 02) 3270-6050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 1670-9595 / 02-6676-5100

10 해외 입찰 및 수출시장 정보 제공

1. 해외 입찰 및 방산시장 정보 제공사업이란?

수출 관련 경험(정보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15년부터 해외 입찰정보 및 수출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방사청의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을 통해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 30번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운영' 참조

■ 정보 제공 내용

- 해외 입찰정보 제공
  - **수집 자료 :** 온라인 유 · 무료 획득원 및 각국 조달사이트 제공 자료
    * **주요 획득원 :** Global Tenders, MET, MERX, TED, 각국 정부 조달사이트 등
  - **입찰정보 주요 항목 :** 국가, 무기체계, 품목특성, 공고기간 등
  - **제공 건수 :** 50개국 1,652건('18), 68개국 1,800건('17), 78개국 2,243건('16)
    * 수출 유망 국가의 무기체계 · 전력지원체계 등의 입찰 정보
  - **SMS 서비스 :** D4B 탑재 입찰정보 SMS 전송
    * 입찰정보 탑재 익일 입찰 공고명 목록을 송신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
- 해외 시장 동향 제공
  - 방산계약 동향, 국가별 협력 분야, 전시회 개최 계획, 국가별 무기체계 기종 결정 및 사업 추진 동향 등
- 국가별 방산시장정보 제공
  - 수출유망국가 시장 진출 가이드북 제공 (12개국)
    * 사우디, 스페인, 노르웨이, 폴란드, 멕시코, 알제리, 케냐, 보츠와나, 이집트, 방글라데시, 이란, 베트남
    * [D4B]-[해외방산시장정보]-[국가별방산시장정보]-[획득제도] : 다운로드 가능

2. 정보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입찰정보 열람 절차

- D4B(www.d4b.go.kr)에 가입 및 회원 로그인 후 메인 화면 하단의 해외 입찰정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

- 국가별 방산시장 및 해외시장 동향도 상단 메뉴(해외방산시장정보)를 통해 열람 가능

  * 홈페이지-해외방산시장정보-국가별 방산시장/해외 입찰정보/해외시장 동향

3. 자주 묻는 질문

Q_ 국가별 방산시장정보 제공 가이드북을 추가적으로 발간할 계획이 있나요?

A_ 현재 사우디, 베트남, 노르웨이 등 12개국에 대한 시장 진출 가이드 북 외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국방조달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가이드북과 조사서는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해외방산시장정보>국가별방산시장정보>획득제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_ 군수품 낙찰정보의 수집을 할 수 있다면 업체의 수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한가요?

A_ 일부 국가의 경우 낙찰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향후 낙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정보 제공 방안을 포함하여 유용한 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2079-6368
국방기술품질원 해외시장분석팀 055) 751-5376, 5378, 5379

MEMO

11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운영

1.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이란?

방산수출입 민원 온라인 처리, 해외방산시장정보 제공 및 우수 방산 제품 사이버 홍보 등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시스템입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www.d4b.go.kr

■ 지원 내용

- **민원행정 온라인-원스탑 서비스**
  - 국제입찰 참가 승인, 수출예비승인, 수출 허가 등 수출입 민원 업무
    * **부가서비스** : 승인절차 안내, 법령 및 서류양식 제공
  - 군용총포도검 제조업 허가 신청 · 수입 허가
  - 방산육성자금 신청, 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
  - 비축원자재 대부 신청
- **해외방산시장 정보 제공**
  - **국가별 방산시장 동향** : 국가별 동향, 국방 현황, 획득제도
  - **해외입찰 정보** : 국가별 조달시스템 입찰 공고 제품 정보
  - **해외시장 동향** : 글로벌 디펜스 뉴스, 해외시장 동향, 해외투자 정보
- **마케팅 서비스**
  - **방산 e-market** : 업체정보, 제품정보
  - **마케팅 정보 제공** : 해외 방산전시회, 시장 개척단
  - 해외무역관 정보, 국가정보
- **회원 서비스**
  - **고객 지원** : Q&A, 자주 묻는 질문(FAQ)
  - **자료실** : 법령 및 규정, 민원 서식 목록
  - **공지사항** : 민원 및 시스템 사용 관련 안내사항

2.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절차

방산업체	»	방사청	»	방산업체
D4B 회원가입 신청		사용 승인 및 권한 부여		로그인 사용

3. 자주 묻는 질문

Q_ 각종 민원 신청을 위한 양식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_ 회원 서비스 메뉴 하단에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최종사용자증명서, 수출 허가(예비승인), 수출중개업, 방산수출 대미동의 등 관련 양식(신청서), 절차 확인 가능

Q_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디로문의해야 하나요?

A_ D4B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정보화기획담당관실(2079-1941)로 연락하시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승인 문의 : 02) 2079-1104

문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2079-6368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과 02) 2079-1941, 6786
국방기술품질원 해외시장분석팀 055) 751-5378~9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현황

인터넷 D4B 메인 화면

인허가 신청

수출 허가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도검
- 수입허가 신청, 운반허가 신청 등

수출입지원
-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 등

방산업무지원
- 방산물자지정
- 비축원자재

방위산업이차보전
- 방위산업육성자금
-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마케팅 서비스

방산 e-market
- 업체정보
- 제품정보

마케팅정보
- 해외전시회 일정
- 해외개척단 일정
- 국제방산행사 및 이벤트
- 방산물자 지정목록

국방기술정보
- 방산업체정보
- 부품 국산화 현황
- 표준분류체계

수출지원사업소개
- 방산수출 허가 등

해외방산시장정보

국가별 방산시장 동향
- 국가별 정보
- 국방현황
- 획득제도
- 입찰제도

해외입찰정보

해외시장동향
- 글로벌디펜스뉴스
- 주재관 시장동향
- 해외시장 정보
- 해외투자 정보

회원서비스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조회
- 회원정보조회

고객지원
- Q&A
- 자주 묻는질문(FAQ)

자료실
- 자료실
- 법령 및 규정
- 민원서식목록

공지사항

지원서비스
- 통합검색
- SMS서비스

2019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제 3 절 |

기술개발 지원

제 3 절

기술개발 지원

12 국방벤처 지원사업

1. 국방벤처 지원사업이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방벤처 기업

- 국방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중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입주계약 또는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 관련 규정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 지원 규모

- **'19년 전체 예산 :** 65.3억 원

■ 지원 대상

- **개발 과제 :**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 **대상 기업 :** 국방벤처 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 국방벤처센터와 입주 계약 또는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CHECK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

1. 주관기업 신청자격 및 신청 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이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제품(기술) 개발비 지원 :** 최대 2년 3억 원(총사업비의 75% 내)
  * 체계업체와 군의 소요가 있는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개발 능력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을 선발·지원하는 '혁신기술 지원 사업'의 경우 최대 3년 5억 원(하반기 공고 예정, 지원 한도 변경 가능)
- **개발 성공 시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중 택일하여 기술료 징수**
  * 방위사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0조
- **아이디어 경진대회, 국방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홍보 및 마케팅은 별도 신청 없이 국방벤처기업으로 통합 지원
- **국방벤처센터를 통한 국방기술 전문가 연계, 국방정보 제공, 군 유관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지원**

국방벤처센터란?

-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서울, 부산, 경남, 전주, 대전, 광주, 구미, 전남)
-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보유기술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실시
- 국방기술 지원, 정보 제공, 판로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등 국방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접수

- **사업 공고 :** '18. 12월('19년도 사업 기 접수 완료)
  *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하반기 공고 예정
- **접수 기간 :** 공고 후 30일
- **제출 장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실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 **제출 서류**
  -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수행 계획서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 **세부 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 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11월
공고 및 설명회 (2월 말~3월 초)	신청 · 접수 (3월 말)	평가 · 선정	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	중간 점검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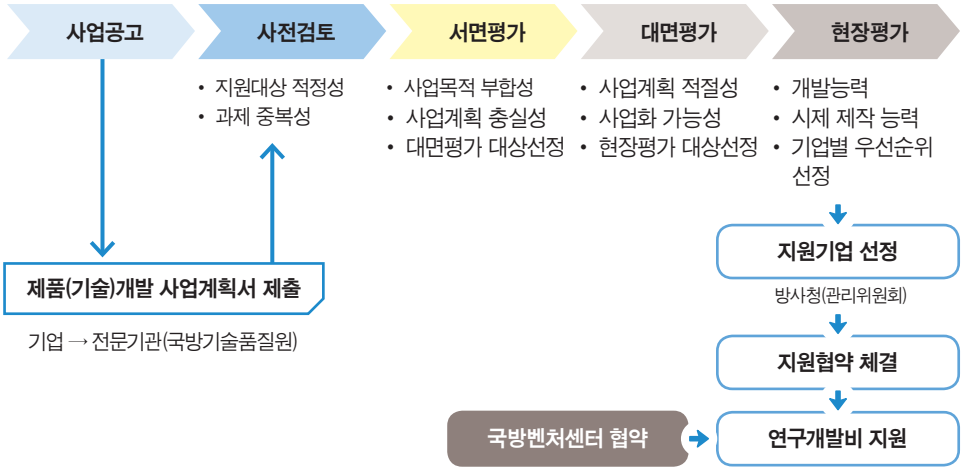

5. 자주 묻는 질문

Q_ 현재 국방벤처센터 입주 · 협약기업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_ 국방벤처센터 입주 · 협약기업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국방벤처 기업은 현재 국방벤처센터에 입주 · 협약하거나 국방벤처센터의 입주 · 협약을 희망한 기업이므로 지원협약 이후 국방벤처센터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Q_ 국방벤처센터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하나요?

A_ 국방벤처센터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국방벤처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방벤처센터를 통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_ 국방벤처센터 미 설치 지역 기업은 어떻게 지원을 받나요?

A_ 가장 인접한 국방벤처센터와 협약을 통해 지원해 드립니다.

∵ 국방벤처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업 소재지 내에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국방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기업 소재지 내에 국방벤처센터가 미설치된 경우 가장 가까운 국방벤처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_ 국방 분야에 소요가 확정된 제품(기술) 개발만 지원 가능한가요?

A_ 국방 분야에 소요가 확정되지 않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기술)이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가능한 제품(기술)이거나 미래 군에 활용 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기술)이어야 합니다.

Q_ 무기체계가 아닌 군수품도 개발과제로 신청할 수 있나요?

A_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기술)은 개발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 2079-6443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팀 055) 751-5191, 5195

13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1.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이란?

방산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소기업(Hidden Champion)

-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의 저서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에서 비롯된 말의 한국식 표현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수출형 중소기업

■ 관련 규정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 지원 규모

- **'18년 전체 예산 :** 26억 원
- **'18년 신규 지원 :** 4억 원(1~2개 업체 선정 예정)

■ 지원 대상

- **개발 과제 :**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or 제품 or 부품 개발
- **대상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기청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 or 경영혁신형 or 수출유망 중소

CHECK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

1. 주관기업 신청 자격 및 신청 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이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최대 3년, 총 사업비의 75% 범위 내 연간 최대 7억
- 자금 지원 범위
  - 기술개발 : 소요비용의 75% 이내(시험평가비 2,000만 원 이내)
- 개발 성공 시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중 택일하여 기술료 징수
  * 방위사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0조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사업 공고 : '19. 2월(예정)
- 접수 기간 : 공고 후 30일
- 제출 장소 :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 제출 서류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성장 및 개발계획서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서류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 세부 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 한국방위산업진흥회(www.kdia.or.kr)

■ 사업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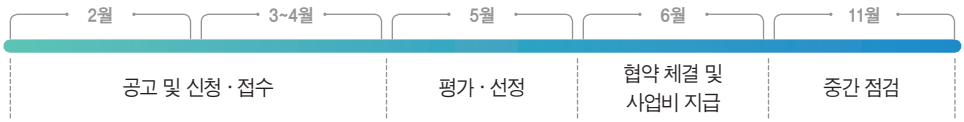

■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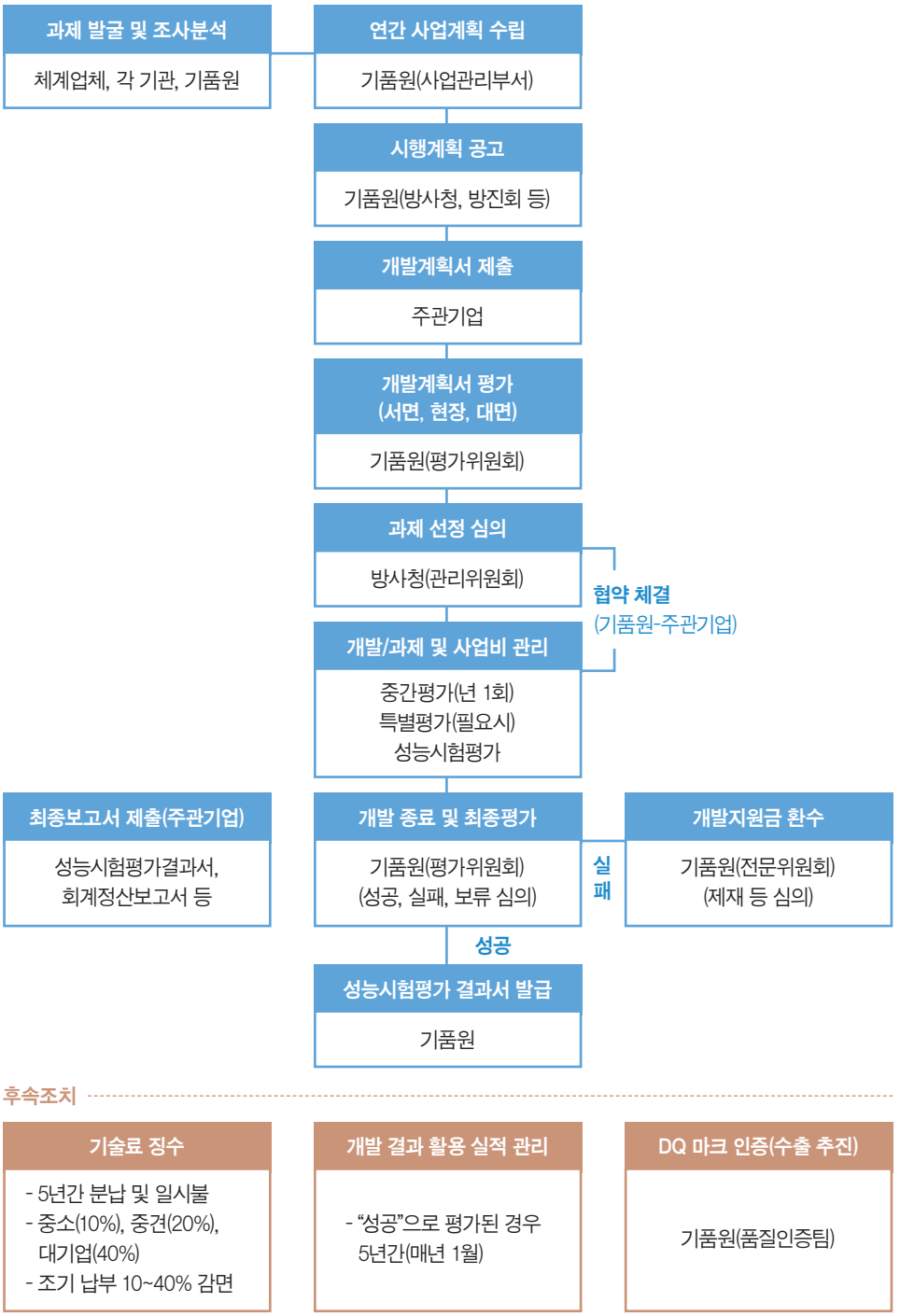
과제 발굴 및 조사분석
체계업체, 각 기관, 기품원
연간 사업계획 수립
기품원(사업관리부서)
시행계획 공고
기품원(방사청, 방진회 등)
개발계획서 제출
주관기업
개발계획서 평가
(서면, 현장, 대면)
기품원(평가위원회)
과제 선정 심의
방사청(관리위원회)
협약 체결
(기품원-주관기업)
개발/과제 및 사업비 관리
중간평가(년 1회)
특별평가(필요시)
성능시험평가
최종보고서 제출(주관기업)
성능시험평가결과서,
회계정산보고서 등
개발 종료 및 최종평가
기품원(평가위원회)
(성공, 실패, 보류 심의)
실패
개발지원금 환수
기품원(전문위원회)
(제재 등 심의)
성공
성능시험평가 결과서 발급
기품원
후속조치
기술료 징수
- 5년간 분납 및 일시불
- 중소(10%), 중견(20%),
대기업(40%)
- 조기 납부 10~40% 감면
개발 결과 활용 실적 관리
-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5년간(매년 1월)
DQ 마크 인증(수출 추진)
기품원(품질인증팀)

3. 성공 사례

■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 공급 협력사(GVC) 참여

- **과제명 :** ㈜동진전기 / 사출좌석 Actuator 개발
- **보조 금액 :** 9.4억 원
- 사출좌석 Actuator 신규 개발 및 유지보수 관련 방산수출 발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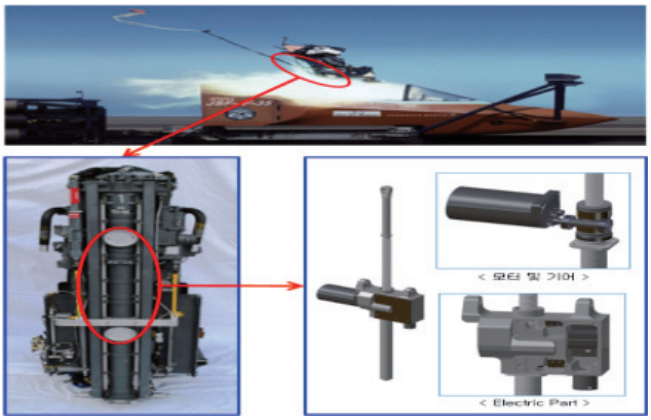

4. 자주 묻는 질문

Q_ 방산업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_ 일반 중소기업도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청 인증(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또는 수출유망중소) 기업입니다.

Q_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_ 중견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유예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_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_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인 경우에도 개발과제로 지원 가능합니다. 부품의 기준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별표Ⅰ-1】 59번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통칭합니다. 향후 상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상품성 및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_ 연습훈령용 SW(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_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워게임 모델(획득용, 분석용, 연습 · 훈련용)은 국방 M&S 체계에 속하며 무기체계 분류상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2】 <8호 그 밖의 무기체계>로 분류되어 있어 무기체계에 속합니다.

Q_ 무기체계가 아닌 군수품도 개발 과제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_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군수품 중 무기체계가 아닌 제품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2-2】 상 전력지원체계로 분리되어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지원 대상이 과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_ 개발 기간은 3년이어야 하나요?

A_ 1년 또는 2년도 가능합니다.

∵ 사업 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하며, 사업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 2079-6416

국방기술품질원 부품개발규격팀 055) 751-5678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대상 기업

인소팩(주) / 스마트 통신시스템('14)

- 기지국 없이 원거리 운용 가능
- 구성원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
- 별도의 버튼 조작 없이 통화 가능
- 해외 군수 및 경호시장 수출 추진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 고속무선전송장비('14)

- 100Mbps급 고속 데이터 전송장비
- 민수 겸용 장비, 소형화 및 경량화
- 도서 · 산간 지역 재난안전 통신망 활용
-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동남아에 수출 추진

㈜ 동인광학 / 열영상 대구경 도트사이트('15)

- 기존 조준경에 열영상 기능을 통합
- 야간 사격 성능 우수
- 레이저 거리 측정 및 자동 탄도 보정
- 중동 등 해외시장에서 개발 요청

연합정밀(주) / 차기인터컴('15)

- 기존 인터컴 보다 소음 감쇄 효과 우수
- 인터넷(IP) 기반의 음성 · 데이터통신이 가능
- 기동전투차량 전투력과 생존성 향상
- 중동 및 동남아시장 수출 추진

(주)보고 / 8인승 수영자 이송정('16)

- 반잠항에 적합한 연안 작전용 이송정
- 승조원 구역 개선으로 생존성 향상
- 중동 및 동남아시장 수출 추진

(주)신동디지텍 / 함위정보 표시 및 비교 · 분배체계('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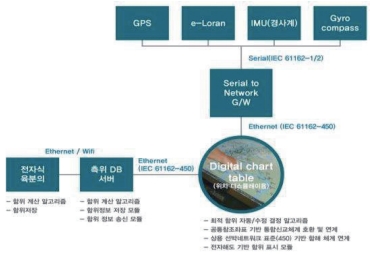

- 적의 전파 교란 시 GPS 불능에 따른 비상용 함위식별 장치
- 해외 군함 및 경비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 및 전파항법장치 등과의 연계장치 구현

(주)네비웍스 / VR시뮬레이터 Platform 개발('17)

-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조종 및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플랫폼
- 동일 조종석에서 적용 장비별 조종모듈을 결합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훈련 공간 제공

㈜아이블포토닉스 / 압전단결정 소재의 전기기계 복합성능평가 및 분석 기술 개발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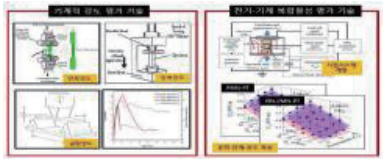

- 소나체계 및 음향센서 요구물성 시험평가시스템 개발
- 고감도 센서에 적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압전단결정 신소재 관련 원천 기술 개발

㈜동진전기 / 사출좌석 Actuator 개발('18)

- BLDC 구동모터를 이용하여 내구성, 저소음 및 고성능을 보유한 사출좌석 Actuator 개발

MEMO

14 핵심 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1. 핵심 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란?

무기체계 핵심 부품 국산화 촉진 및 방산 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무기체계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제를 선정 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입니다.

핵심 부품의 정의

-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발휘에 필수적인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부품
  - 국내에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 확보되어있지 않은 부품
  - 지속적으로 소요가 제기되나 초기비용이 높아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품
  - 국산화 여부가 무기체계의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

■ 관련 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편 제5장(국산화)
-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 지원 규모

- **'19년 전체 예산 :** 140억 원
- **'19년 신규 지원 :** 68억 원(잠정)

■ 지원 대상

- **대상 과제 :** 무기체계 부품 중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대상 업체 :** 중소기업 원칙(중견 · 대기업 참여 가능)
  * 과제 공고 시 중견 · 대기업 참여 가능 여부 명시

■ 지원 내용

- 과제당 최장 5년 이내의 개발 기간에 최대 50억 원 한도 내에서
  - **중소기업 :** 총 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 **중견기업 :** 총 개발비의 60% 이내 지원
  - **대기업 :** 총 개발비의 50% 이내 지원
- 개발 성공 시 수의계약권 및 수입가격 인정(5년)
- 개발 성공 시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중 택일하여 기술료 징수
  * 방위사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0조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주관기업 선정 공고** : '19. 1월 (필요시 연내 추가 공고)
- **접수 기간** : 공고 후 30일
- **신청** : 부품 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compas.dtaq.re.kr)
- **세부 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품질원(compas.dtaq.re.kr)

■ 사업 일정

1~2월	3~4월	4월	4월 이후
주관기업 선정공고	신청기업 평가 (서면/현장/대면)	주관기업 선정	협약 체결 진도 관리

■ 처리 절차

* 핵심 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전문 기관은 국방기술품질원

3. 자주 묻는 질문

Q_ 핵심 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_ 부품 국산화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부품 국산화 관리시스템(compas.dtaq.re.kr)을 통해 공고된 과제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과제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부품 국산화 관리시스템(compas.dtaq.re.kr) 참조

Q_ 핵심 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_ 개발비 지원(75%), 기술 지원 및 개발 성공 시 구매 보장(5년) 등을 지원받습니다.

∵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개발비의 75% 지원(최대 50억 원 이내)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받으며, 개발에 성공한 후에는 5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_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제의 개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_ 최대 5년 이내,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제의 개발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하며, 1회에 한하여 전문 기관이 지연 사유,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6조

Q_ 업체가 성실하게 개발했으나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_ 성실 수행 판정 시 출연금을 환수하지 않으며 재도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평가 결과 성실 수행 판정을 받은 과제는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주관기업이 재도전을 신청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도전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 개발 기간은 2년 이내, 정부지원금은 기존 출연금 잔액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 출연금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0조 및 제28조

문의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 2079-6442 / 6473
국방기술품질원 부품개발규격팀 055) 751-5675

■ 핵심 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현황

(억 원, 개)

사업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예산	15	30	60	75	95	120	123	118	119	140
신규 과제	10	9	15	8	1	7	5	8	10	-

■ '18년 핵심 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선정 과제 현황

순번	적용장비	개발대상부품	주관기업
1	함정 전자전장비	디지털동조발생기	빅텍
2	천마	직류모터	동성전기
3	천마	구동(고각)모터	삼현
4	K55A1	폐쇄기조립체	삼호정밀
5	소해함	음탐기용 부품3종	소나테크
6	수리온	직류전원변환기(TRU)	현대파워시스템
7	장보고	압력선체 관통구 커넥터 조립체	연합정밀
8	차륜형 대공포	포탑선회 베어링	원진앰앤티
9	K21차륜형 경구난차량	차제제어 컴퓨터용 회로카드 조립체(4종)	대원기전
10	천마	유도탄 조종장치용 감지기 조립체	LIG넥스원

15 핵심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

1. 핵심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이란?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 개발하거나 국산화 파급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관련 근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편 제5장 제3절(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 「핵심 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제5장 제5절(핵심소프트웨어 개발)

■ 지원 규모

- **'19년 전체 예산 :** 121.68억 원
- **'19년 신규 지원 :** 23.11억 원

■ 지원 대상

- **참여 대상 :** 산 · 학 · 연
  - 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벤처기업 및 부속연구소
  - 정부 출연 연구소, 학계연구소, 국과연(일부 분야로 제한*)
    * 보안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 높은 실패위험과 경제성이 낮은 분야 등
- **과제 선정 기준**
  - 미래 첨단 무기체계 국산개발에 필요한 SW 기술
  - 무기체계 SW 표준 플랫폼 및 국산화 파급효과가 큰 SW
  - 무기체계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기반 SW 기술
  - 선진국이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핵심 SW 기술
  - 4대 중점 투자 분야 등 미래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SW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

- 감시정찰 · 센서, 정밀타격, 방호(방공, 화생방, EMP), 무인화

■ 지원 내용

- **개발 기간 :** 최대 5년
- **과제 당 지원 금액 :** 30억 원 내외
- **'19년 지원 과제 :** '18년도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업 선정
- **'20년 신규 과제 :** 5~7개 선정 예정(예산 고려)

사업추진 방식 : 과제 선정과 주관기관 선정 절차를 분리

- **과제 선정** : 기획 중점 및 수요조사를 통해 차년도에 추진할 과제를 선정(Top-down)
- **주관기관** : 전년도에 소요결정된 과제에 대해 당년도 제안서 접수 · 평가 후 선정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SW 과제 공모

- **과제 공모** : '19. 3월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 **접수 기간** : 공고 후 40일
- **제출 장소** :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http://www.dtaq.re.kr)
- **제출 서류** : 과제 제안서

■ 과제 공모 일정

■ 과제 공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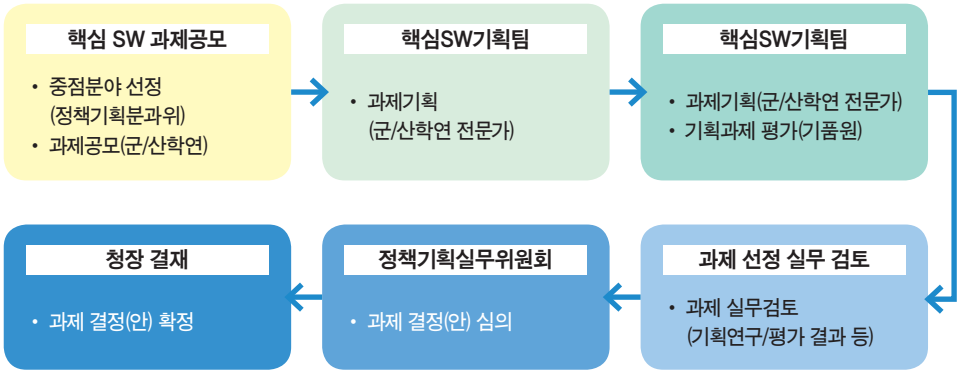

■ 주관기관 선정 일정

4월	6~7월	8월	10월
제안요청서 공고	제안서 평가	주관기관 선정	사업계획서 최종승인

■ 주관기관 선정 절차

제안서 공모
- 제안서 공모 기간 : 40일 (재공모 : 10일)
- 접수 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작성 기관 발표 자료
- 평가지표 참조
- 제안서 평가 : 국방기술품질원

↓

평가결과 제출
- 평가 결과 작성/제출 (기품원 → 방사청)
- 종합점수 8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선정

↓

협상대상 우선순위 결정
- 결과 통보(방사청 → 기품원 → 국과연)

↓

협상(국과연)
- 협상/계약 체결(국과연 ↔ 선정업체)

3. 성공 사례

■ 대표 성공 사업

회전익 항공기용 상태감시시스템 OFP SW개발

회전익 항공기 동력 전달계통의 기계적 결함 상태 및 항공기 주요신호를 감시하여 항공기의 사전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상태감시시스템을 국산화 개발

함정 관리 지원 체계 SW 개발

함정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승조원, 격실, 소병기 · 탄약 및 기타 자원의 현황과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상황 관리를 자동화하여 상황 인지

4. 자주 묻는 질문

Q_ SW 전문 중소기업인데 과제를 제안할 수도 있나요?

A_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제 제안 시 旣 식별된 기획 중점 기술 분야를 참고하여 제안하는 것이 과제 선정에 유리하며, 과제 제안서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하시면 되고,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핵심 기술 소요 공모)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핵심 기술 공모시스템의 '2016년 기획 중점 기술' 참조

Q_ 기업이 제안한 과제가 공모 결과, 핵심 SW 과제로 선정이 되면 차년도 주관기관 선정 시 제안한 기업이 우대되나요?

A_ 우대하지 않습니다.

∵ 제안된 과제의 내용은 소요 검토 및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주관 형태 및 기관 선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진행됩니다.

Q_ 핵심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의 연구 개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A_ 응용연구나 시험개발 수준입니다.

∵ 무기체계에 활용 가능한 응용연구 또는 시험 개발 수준에서 핵심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은 종료되고 해당 무기체계에 실질적인 탑재 가능성 여부는 선행연구나 탐색 개발 절차에서 검토됩니다.

Q_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개발과제 완료 시 방산물자 지정이나 규격화가 이루어지나요?

A_ 소프트웨어는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으나, 규격화는 시험 개발 과제에 한하여 규격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기술혁신과 02) 2079-6651
국방기술품질원 기획총괄팀 055] 751-5404, 5407

■ '19년 주관 기업 선정 추진 과제('18년 공모 과제 선정 결과)

구분	과제명	입찰 공고
1	화포용 추진제 성능 예측 M&S SW	3월
2	전술 상황을 고려한 AI기반 이동통신망 자율 운용 기술	

■ '15~'18년 주관 기업 선정 결과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
'15년	SPL 기반의 무기체계 표준 SW 플랫폼구축 기술 개발	국과연
	무기체계 SW 신뢰성 확보 및 검증 기술 개발	국과연
	무기체계 내장형 SW 보안강화코드 기술 개발	국과연
	고폭화약의 폭발 성능 및 운용안정성 정밀 해석 SW 기술	산학연
'16년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공통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개발	산학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결함 자동 탐지 기술	산학연
	함정 전투손상통제관리 SW 개발	산학연
'17년	장시간 위치정확도 보장을 위한 잠수함용 복합보정항법 SW 개발	산학연
	함정 추진체계 동적 시뮬레이션 SW 개발	산학연
	MIDS LVT 에뮬레이터 개발	산학연
	항공용 SIL의 비행체 탑재장비 모델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산학연
'18년	고정표적에 대한 무기 위력 및 효과도 분석 SW 개발	산학연
	자동화방공체계(MCRC) 항적추적기술 개발	산학연

16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

1.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이란?

민간의 이미 성숙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작전 운용 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를 3년(3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개발하여 군사적 실용성을 입증하고,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어 정의

- 신개념기술시범(ACTD :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 관련 규정

- 「방위사업법」 제18조(연구개발)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4조(ACTD 과제 요청 · 선정 및 전력 소요 결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절 신개념기술시범사업
-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 관리 지침」

■ 지원 규모

- **전체 예산 :** 42억 원(중기 예산 규모)

■ 과제 대상

- 기술성숙도(TRL) 6 이상인 무기체계
  * 단, TRL 5인 경우 단기간 기술 성숙이 가능한 과제 선정 가능

■ 사업 주관 : 산 · 학 · 연

■ 투자 형태 : 정부 투자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과제 공모** : '19. 4월 예정(연중 수시로 과제 제출 가능)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 **접수 기간** : 공고 후 40여 일(기품원 공고문에 세부 기간 명시)
  * 공모 기간 중 산학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순회 설명회(2회) 개최
-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actd@dtaq.re.kr)
- **제출 서류** : 과제요청 양식(소요 제기 요구서) 1부
- **문의처** : 국방기술품질원 기획총괄팀(☏ 055) 751-5409)

■ 처리 절차

- 과제 선정 절차 (F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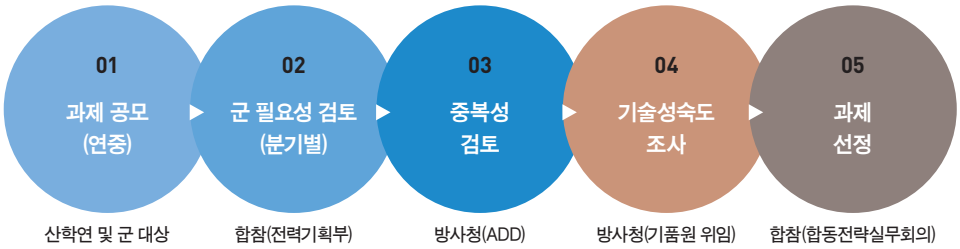

- ACTD 사업 절차 (F+2년)

3. 자주 묻는 질문

Q_ ACTD 과제는 무기체계만 가능한가요?

A_ 네, 그렇습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2]의 무기체계 세부 분류에 명시된 무기 체계에 해당하는 과제만 ACTD 과제로 선정됩니다.

Q_ 기본 성능 개발과 보완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_ 기본 성능 개발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ACTD 과제의 기본적인 성능을 개발하는 단계이며, 보완개발은 소요군 베타테스트, 소요 결정 등을 통해 도출된 보완 사항, 상호 운용성, ILS 등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Q_ ACTD 사업 절차에서 기본 성능 개발 후 합참의 소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ACTD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_ 기본 성능 개발로 ACTD 사업은 종료됩니다.

∵ ACTD사업의 기본 취지가 군사적 실용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소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 수행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기술혁신과 02) 2079-6642
국방기술품질원 기획총괄팀 055) 751-5409

MEMO

17 민 · 군 기술협력 사업

1. 민 · 군 기술협력 사업이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 간 기술 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관련 근거

- 「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법률 제15344호, '18.1.6 개정)
- 「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24호, '18.7.3 개정)
- 「민 ·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방사청훈령 제357호, 16.4.28 개정)

■ 지원 규모

- **'19년 전체 예산 :** 671.08억 원(계속과제 572.19억 원 포함)
- **'19년 신규 지원 :** 98.89억 원(약 30개 업체 선정 예정)

■ 지원 분야

- 민과 군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 무기체계 및 민수산업에의 파급효과(대외 종속 탈피, 경제성장 기여)가 높은 분야
-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 증대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미래전에서 전쟁의 양상을 바꿀 정도의 전력 우위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미래의 산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효과성이 높은 분야
- 국민안전 관련 국가 안보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
- 대규모 투자, 기술개발의 시급성으로 인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정부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분야

■ 지원 내용

- **개발 기간 :** 최대 5년 (응용연구 3년, 시험개발 2년)
- **과제 당 지원 금액 :** 최대 50억 원, 연 10억 원 내외
- 군수 적용 관련 기술 자문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과제 수행 기관(주관 및 참여) 유형별 정부 지원 비율 차등 적용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총 연구비 중 정부 지원 비율	50% 이내	60% 이내	75% 이내	100% 이내

사업추진 방식 : 과제 선정과 주관기관 선정 절차를 분리

- 과제 선정 : 기획 · 수요조사 통해 차년도 추진할 과제 선정(Top-down, Bottom Up)
- 주관 기관 : 전년도에 수요조사된 과제에 대해 당년도 제안서 접수 · 평가 후 선정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사업 공고 :** 3~4월(기술수요조사 및 주관 연구기관 선정)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민군협력진흥원(www.icmtc.re.kr)
- **접수 기간**
  - **기술 수요 조사 :** 3월~4월
  - **주관 연구기관 선정 :** 4월~5월
    * 필요 시 추가 공고 수행
- **제출 장소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
  * 주관 연구기관 신청은 온라인 전산 등록과 오프라인 서류 접수 모두 제출
  주소 (우) 34068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10층
- **제출 서류**
  - **기술 수요 조사 :**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 **주관 연구기관 선정 :**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 서식은 해당 공고문 및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사업 일정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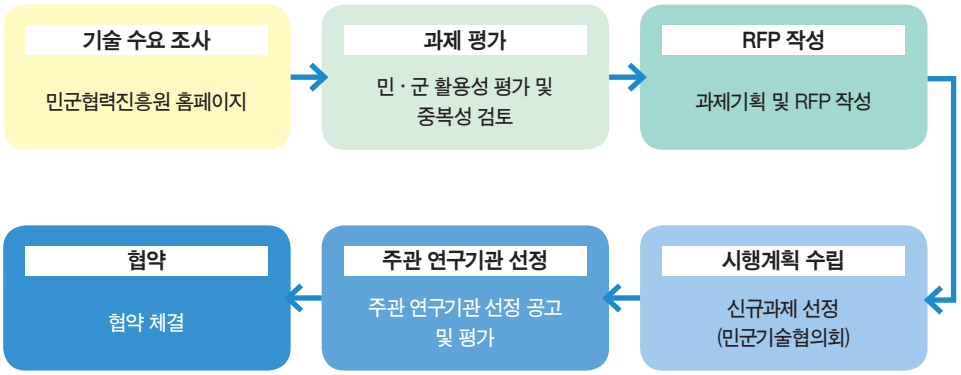

3. 주요 현황 및 성공 사례

■ 민 · 군 기술협력 사업 현황

(억 원, 개)

사업연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예산	350	409	416	590	660	677	654	667
신규 과제	10	20	27	57	29	40	42	33

■ 주요 선정 과제

연도	과제명	개념도	활용분야	주관기관
'15	개인용 미기후 냉난방 시스템 개발		(군) 병사용 체온조절 시스템 (민) 소방관 체온유지 시스템	㈜제펠
	고성능 고신뢰 RF MEMS Switch 기술 개발		(군) 항공우주산업용 통신시스템 (민) Tunable antenna 적용	㈜기가레인
'16	LTCC 기반의 소형 경량화된 SAR 송수신 모듈 개발		(군) 무인기 SAR, 위성SAR (민) 원격탐사 mini SAR	㈜유텔
	고정밀 열감지 화약 퓨즈 개발		(군) 155mm 고폭탄 (민) 자동차 에어백용 점화용 퓨즈	㈜수아
'17	UAV기반 Ka대역 통신중계 및 Hot Spot 구축을 위한 탑재체 개발		(군) UAV 기반 공중중간 통신 중계 체계 구축 (민) 긴급 재난 통신망 구축	㈜휴니드테크놀러지스
	8-12μm 적외선파장대역의 초분광 영상응용을 위한 음향광학 단결정 성장 및 가변필터 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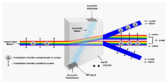	(군) 화학작용제의 오염운 탐지 및 감시, 은폐물/위장 감지 (민) 환경감시, 휴대용 장비 (농산, 식품), 바이오 분야	㈜그린광학
'18	포병진지/주요시설 주변 수색정찰용 UAV 개발		(군) 감시정찰, UAV 통신 중계 (민) 환경정보 수집, 산불감시	유콘시스템㈜
	소음 및 영상신호 결합 기반 무인기 검출 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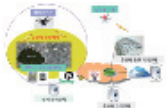	(군) 군사 지역 감사 (민) 사생활 보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자주 묻는 질문

Q_ 민 · 군 기술협력 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_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를 통해 과제 제안서를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서는 연 1회 종합하여(매년 5월경) 차기 연도 과제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과제제안서 신청은 산 · 학 · 연 모두 가능

Q_ 제안자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A_ 과제 제안자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채택될 경우 주관 연구기관 선정 시 취득 점수의 3% 내외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Q_ 과제 기간 및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_ 과제 내용에 따라 제안자가 기간 및 예산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획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응용연구 2~3년, 시험개발 2~3년 / 정부 출연금 연 10억 원 내외

Q_ 주관 연구기관 선정 시 과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_ 국방 및 민간의 산 · 학 · 연 모두 주관 연구기관, 참여 기관, 위탁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 가능
- **영리법인** : 주관 연구기관(부설연구소 설치 기업), 참여 기관으로 참여 가능

Q_ 지식재산권은 누가 소유할 수 있나요?

A_ 국방연구개발사업과 달리 주관 연구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은 기술료 완납 시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02) 2079-6393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042) 607-6020, 6030

MEMO

18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부품 국산화)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부품 국산화)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중 수요처(공공기관 · 대기업 등)에 필요한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구매하는 사업으로 국방 분야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제안하는 부품 국산화 과제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시행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 지원 대상

- **대상 과제** : 수요처(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
-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지원 내용

- **개발 기간** : 최대 3년
- **과제당 지원금액** : 최대 5억 원

구분	지원 규모	정부 출연금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조사과제 (전략과제)	3년 이내 5억 원 이내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 개발 성공 시 수의계약권 인정(최장 5년)
- 개발 성공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기술료 징수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사업 일정** : 중소벤처기업부 연간 계획에 따라 연 3~4회 진행
  * '19년 과제 공고 시기 : 3월, 6월, 8월
- **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및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 **접수 기간** : 공고 후 30일
- **접수 장소**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온라인 접수 http://www.smtech.go.kr)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 조회) 동의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기타 사업 공고 시 중기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 작성 서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 확인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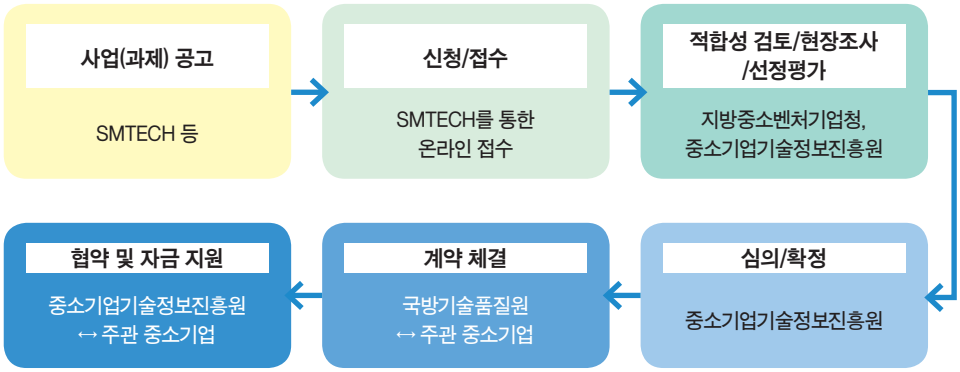

3. 자주 묻는 질문

Q_ 방산업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_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일반 중소기업은 모두 가능합니다.

∵ 과제 공고, 일정 및 관련 규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http://www.smtech.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Q_ 업체가 성실하게 개발했으나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_ 성실실패 판정 시 정부지원금 환수는 없습니다.

∵ 과제 최종평가 결과 성실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는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성실실패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출연금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Q_ 참여 희망 업체에서 개발과제를 제안할 수 있나요?

A_ 구매조건부사업 과제 제안은 국방기술품질원(국산화사업실), 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체계생산 방산기업을 통해 기품원으로 과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과제의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거쳐 승인된 과제에 한하여 중기부 일정에 따라 접수하며 해당 과제의 제안 여부에 관계없이 주관기업 선정평가를 통해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의

- 각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국방기술품질원 부품개발규격팀 055) 751-5680, 5679

■ 국방 분야(부품 국산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선정 현황

연도	적용장비	개발대상부품	주관기업
'17	LSF	LSF용 상가장치 (LOADING DEVICE)	한국유수압
	포, 40MM L70, 함정용(노봉)	노봉함급 탄장치용 회전감지기	(주)대영전장시스템
	장보고-II급 잠수함	잠수함 공격잠망경용 헤드 윈도우	(주)그린광학
	비호복합	비호복합 냉방장치용 발전기	㈜썬테크
	함정용 전자전장비	함정용 전자전장비 광대역 전력증폭기	㈜휴미디어
	함정용 전자전장비	함정용 전자전장비 대역통과여파기 Cavity Type 3종	㈜제트에이치티
	함정용 전자전장비	함정용 전자전장비 대역통과여파기 Lumped Type	블루웨이브텔㈜
	함정용 전자전장비	함정용 전자전장비 전력제한증폭기	㈜유텔
'18	소형무장헬기 (LAH)	조종실 일반등 등 9종	디지트론
	사단무인기	항공기용 프로펠러	한국프롭

19 국방연구시설 · 장비 정보서비스(DRES) 구축

1. 국방연구시설 · 장비 정보서비스(DRES)란?

국방 연구개발 기관(국과연, 기품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연구시설 ·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산 · 학 · 연 기관, 방산업체 등에서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말합니다.

DRES란?

- Defense R&D Equipment Service(국방연구시설 · 장비 정보서비스)의 약어로, 국방 분야의 연구 시설 · 장비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임

■ 관련 근거

- 「국방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적용 및 활용 기관

- **등록 · 활용**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 **활용** : 산 · 학 · 연 기관, 방산업체

■ 적용 대상

-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 · 장비
  - 50억 이상 시설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 주요 기능

- 연구시설 · 장비정보 등록 · 조회 · 수정 기능
- 중복성 검토 기능
- 운영 및 유지보수 일지 작성 기능
- 시설 · 장비 등록번호 및 등록증 출력 기능
- 공개할 수 있는 시설 · 장비 정보 인터넷 공개

2. DRES는 이런 기능을 지원합니다.

■ 업무흐름도

- **심사**
  - 중복성 검토 기능 및 결과 제공
- **구축 및 등록**
  - 연구시설 · 장비정보 등록 · 수정 및 조회
  - 연구시설 · 장비 등록번호 발급, 등록증 출력
  - 출연 기관 간 자산관리시스템 연계
- **운영 및 활용 / 처분**
  - 운영 · 유지보수 일지 작성
  - 처분 결과 반영

■ 사업 일정('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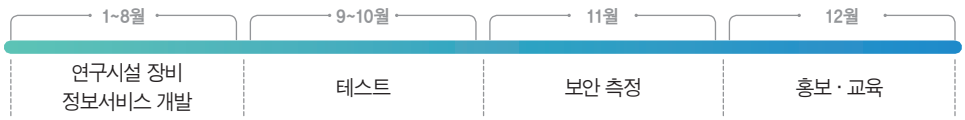

4. 자주 묻는 질문

Q_ 방산업체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_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시험장 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부서와 문의하시면 됩니다. DRES 구축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국방연구 시설 · 장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할 수 있는 연구시설 · 장비 정보를 식별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며, 산 · 학 · 연 및 방산업체 기관들은 시설 · 장비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_ 시설 · 장비정보 관리 항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_ 시설 · 장비명 등 총 57개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국방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8에 따라 57개의 항목을 수집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Q_ 정보 등록 제외 대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_ 기자재 · 비품/단독소프트웨어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국방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8에 따라 기자재 · 비품, 단독소프트웨어(오피스, AutoCAD 등) 등이 제외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Q_ 시설 · 장비 등록번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_ 구축기관, 시설 · 장비 구분, 등록일자,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 등록번호의 형식은 OO-OO-OOOO-OOOO이며, 구축기관(2자리), 시설 · 장비 구분(2자리), 등록연월(YYMM), 일련번호(4자리)로 구성됩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02) 2079-6384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정보확산팀 055) 751-5526

MEMO

20 국방과학기술 이전 제도

1. 국방과학기술 이전 제도란?

국내 업체의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국방과학기술 민간 이전 요청에 대한 승인제도입니다.

국방과학기술

-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 · 제조 · 가동 · 개량 · 개조 · 시험 · 측정 등을 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로서 다음의 것

  1. 정부 지원 국과연 주관 및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
  2.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
  3. 국제공동연구개발 또는 국내 업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확보된 기술
  4. 민간 투자 개발 기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31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 「방위사업법」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고시」

2.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연중
- **접수 기관** : 해당 기술 보유 기관(청 국방기술보호국, 군, 국과연)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소요
- **제출 서류**
  - 기술 이전신청서
    * 기술 이전 목적, 이전받을 기술 내용, 활용계획서를 포함해서 작성

■ 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

- 정부가 보유한 모든 국방과학 기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전 가능
  - 국가안보를 위해 일부 기술에 한해서만 기술 이전을 제한
- 주요 이전 기술 목록은 국방기술거래장터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에 게재된 목록은 민수에서도 유용해 보이는 기술을 선별하여 게재한 것으로 목록 외에도 업체가 신청한 기술을 정부가 보유 시 이전 가능
  - **주요 분야** : 센서/정보통신/제어전자/탄약 · 에너지/추진/화생방/소재/플랫폼 · 구조/기타

국방기술거래장터(http://techmart.dtaq.re.kr/techmart)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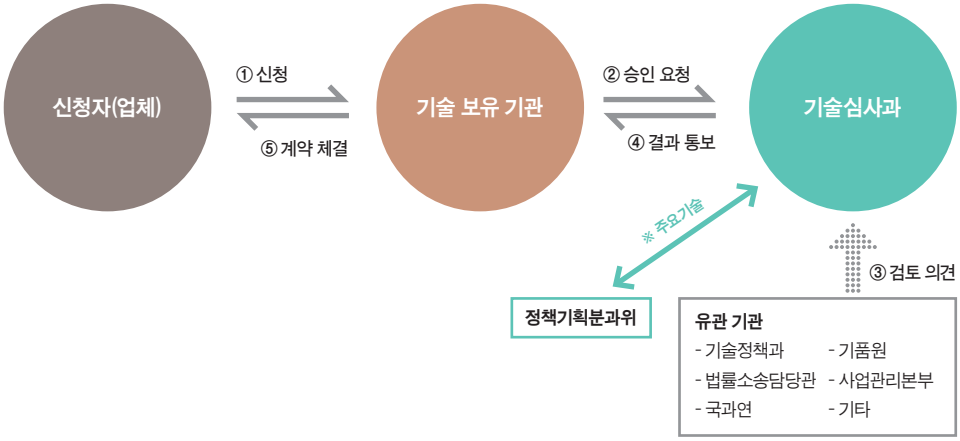

■ 심의 및 승인

- **승인 요청 :** 기술 보유 기관이 국방기술보호국에 요청
  * 기술 보유 기관은 업체와 대상 기술 및 이전 범위, 기술료 등을 협의한 후 요청
- **기술 이전 심의 사항**
  - 기술 이전 신청자의 적격 여부
  - 기술 이전 내용 및 범위
  - 해당 기술을 활용한 관련 사업의 수행 계획
  - 기술 이전 필요성(이전 기술의 민수 분야 파급효과 포함)
  - 기술료 산정 기준 · 징수액 및 징수 방법
  - 기술료 감면 사유
  - 기술 이전 절차 및 문제점
  - 기술 이전 시 업체가 준수해야 할 제한 사항
  - 기타 기술 이전 시 필요한 사항
- **승인 및 통보 :** 검토 결과 종합하여 승인 여부를 기술 보유 기관에 통보
- **계약 체결 :** 승인된 기술 이전 시, 기술 보유 기관이 업체와 계약

■ 기술료 산정 기준

- **방산물자 국외 수출 :** 제품 단위당 국내 순조달 가격의 2%
- **민수품 생산**
  - **착수기본료 :** 자료/부문/볼륨 가중치 등 고려 기술 소유 기관 1인당 인건비(연구인력)를 곱하여 산정
  - **경상기술료 :** 제품 단위당 순 판매가격의 2~3%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참고

3. 자주 묻는 질문

Q_ 이전 신청 및 승인 관련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_ 이전 신청 및 승인 관련 별도로 징수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Q_ 기술 이전 신청에서 승인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_ 기술 보유 기관은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기술 이전 신청자의 적격 여부, 기술 이전 내용 및 범위 등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 이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 보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Q_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_ 법규정상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기술 이전 신청 업체는 기술 이전 신청 시 기술 이전의 목적, 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술내용,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Q_ 이전 승인 시 기술료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A_ 기술료 납입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산물자 수출** : 수출로 인한 납품 후 1월 이내
2. **민수품을 생산** : 착수금 → 계약 체결 후 1월 이내,
   경상기술료 → 제품 생산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3. **기술수출계약 체결** :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

Q_ 방산수출 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_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기술료 감면) 각 호의 사유 및 규모 내에서 기술 보유 기관 또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승인업무] 02) 2079-6826

국과연 민군기술진흥원 국방기술사업센터 [신청 · 접수] 042) 607-6063

21 민간 개발 무기체계 시험평가 지원 제도

1. 민간 개발 무기체계 시험평가 지원 제도란?

민간업체가 수출, 국내 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의 성능 시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官 주도로 성능 시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근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6조의2(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 지원 대상

- 수출 또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구성품

■ 지원 내용

- 성능시험평가 수행 및 성능시험평가 결과서 발급(지원 필요 결정 시)

■ 관련 기관

-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국내 판매용, 수출용)** : 시험평가 지원 접수
- **합참 시험평가부(국내 판매용), 국제협력관(수출용)** : 시험평가 지원 조정 · 통제
- **방위사업청** : 시험평가지원 필요성 검토
  ※ 국내판매용(합참 시험평가부), 수출용(국제협력관)
- **국방기술품질원** : 성능 시험 지원 주관 수행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접수 기간** : 연중
- **접수처** : (국내판매/수출용)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시험평가기술팀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우)04353
- **제출 서류** : 성능시험평가 지원요청서 1부, 시험평가계획(안) 1부

■ 시험평가지원계획(안) 작성 및 승인

- **국내 판매용** : 기품원이 요청 업체와 협조 및 작성
  * 기간, 장소, 항목, 기준, 조건,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 협조
- **수출용** : 기품원이 요청 업체와 협조 및 작성
  * 기간, 장소, 항목, 기준, 조건,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 협조
- 시험 기준
  - **기본 원칙** : 구매국의 요구 및 소요결정서
  - **그 외 항목** : 업체가 제시(요구)한 기준

■ 처리 절차

국내판매용

성능시험 지원 요청
개발업체 → 방산기술센터

↓

성능시험 지원 의뢰
방산기술센터 → 합참(필요성 검토)

↓

성능시험지원계획(안) 제출 요구
합참(성능시험지원이 필요할 경우) → 기술품질원

↓

성능시험지원계획서 검토 → 승인
합참

↓

성능시험지원 용역 계약 및 수행
기술품질원, 개발업체

↓

성능시험지원 결과 통보
기술품질원 → 업체, 합참 등 관련기관

수출용

성능시험 지원 요청
개발업체 → 방산기술센터

↓

성능시험 지원 의뢰
방산기술지원센터 →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

↓

성능시험 필요성 검토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

↓

성능시험 지원 의뢰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 → 기품원

↓

성능시험 지원 계획 수립
기품원

↓

성능시험 지원 용역 계약 및 수행
기품원, 개발업체

↓

성능시험 지원 결과 통보
기품원 → 업체, 방사청 등 관련기관

■ 결과 판정

- **전체(종합) 판정** : 없음
- 항목별로 기준과 시험 결과에 따른 충족 여부만 기록

3. 자주 묻는 질문

Q_ 방산업체가 아니어도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A_ 일반 기업도 가능합니다.

∵ 성능시험 지원을 요청하는 대상품이 개발이 완료되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기업도 가능합니다.

Q_ 구매국의 요구 없이 민간업체가 개발하여 수출 추진 중인 무기체계의 경우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A_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 성능 시험 지원은 기본적으로 요구 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므로 구매국의 요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험 항목 및 기준 설정 등 시험평가 지원 범위 설정이 제한되므로 불가합니다. 다만 필요성 검토 부서인 국제협력관에서 수출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_ 무기체계가 아닌 군수품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A_ 지원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으로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여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체계 등은 지원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Q_ 시험평가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_ 신청하신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성능시험 지원 제도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체의 필요에 의한 요청에 따라 실시되므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요청업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시험평가지원 수행 기관인 기품원과 요청업체 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Q_ 시험평가지원을 통해 성능 입증을 받은 대상품은 추후 구매시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나요?

A_ 생략할 수 없습니다.

∵ 성능 입증을 받은 대상품이 추후 구매사업절차를 통해 대상장비로 선정되어 기종 결정을 위한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소요군이 시험평가를 수행해야 하므로 별도의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지원 시 성능을 검증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시험평가기술팀 02) 2079-1394~1396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2079-6362

MEMO

2019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제 4 절 |

금융·경영·기술보호 지원

제 4 절

금융·경영·기술보호 지원

22 방산육성자금 지원사업

1. 방위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이란?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중 금융기관의 비용을 유치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관련 참여업체에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38조(자금융자)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고시)」

■ 자금 융자 대상 사업

- **연구개발 및 핵심 기술 개발** : 정부 투자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 정부 투자 업체 주관 개발사업, 무기 또는 전력지원체계의 업체 투자 또는 공동 투자 개발사업, 핵심 기술 연구개발 시제업체로 선정된 과제(SW 개발 관련 비용 지원가능)
- **국산화** : 체계 부품 국산화 승인품목 개발, 일반 부품 국산화 승인 품목 개발, 운용·유지 및 정비 능력 개발의 부품, 시험·검사 장비 등 국산화 승인 품목 개발
-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 제품 설계,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SW, 기계장치 구입비
- **원자재 비축** : 방산물자의 국방중기계획 물량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출물량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 **방산물자 등 수출** :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품목
- **방산시설 설치 등** : 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에 사용하는 시설

■ 지원 대상

- **방산업체 및 방산 관련 참여업체**
  - 일반업체의 경우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자금 융자 가능
    * 국산화 개발, 방산물자 등의 수출, 핵심 기술 및 부품 개발

■ 지원 내용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분 야	적용 금리	대출기간	한도액 및 우대사항
연구개발, 원자재비축 등	* 기업대출 평균금리 4.0% 이상 시 (고정금리 적용) - 중소기업 : 0.5% - 중견·대기업 : 2% * 기업대출 평균금리 4.0% 미만 시 (변동금리 적용) - 중소기업 : 기업대출 평균금리의 12.5% 부담 - 중견 · 대기업 : 기업대출 평균금리의 50% 부담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1개 업체당 한도액 - 융자 총액의 30% 이내
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시설의 설치 등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유휴시설의 유지		7년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방산물자 등 수출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 이후 6개월 이내 분할 상환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접수 기간** : '19년 2월
  * 가용예산에 따라 추가 공고 예정
- **제출**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방위산업진흥회 진흥팀
  * 협약은행 : HN농협, KDB산업은행
- **제출 서류** : 방산육성자금 소요 신청서
- **세부 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한국방위산업진흥회(www.kdia.or.kr)

■ 사업 일정

2월	4월	10~12월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융자 대상 업체 선정	융자 사업자 현장 점검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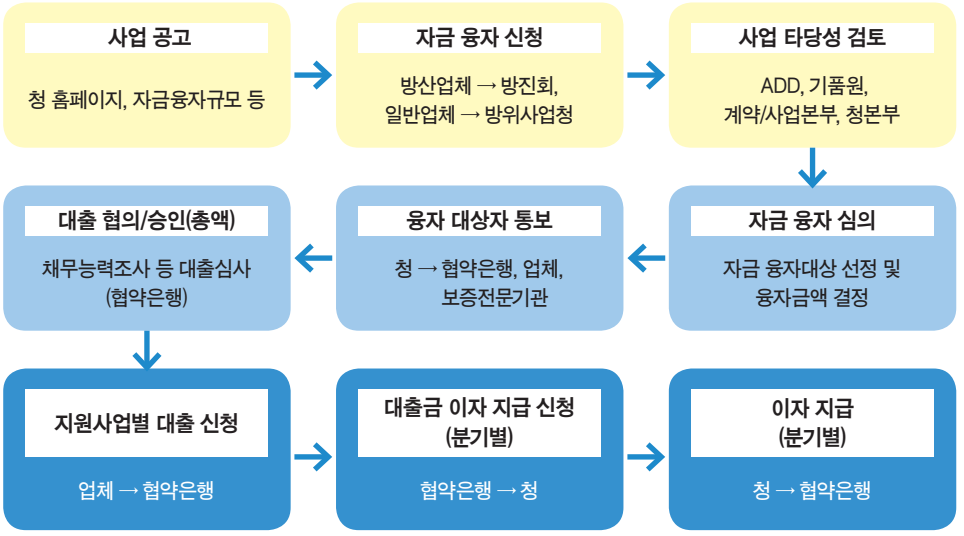

3. 지원 규모

구 분	'17년 융자추천액(업체수)	'18년 융자추천액(업체수)
방위산업 육성자금	1,641억 원(31개)	1,263억 원(26개)

4. 자주 묻는 질문

Q_ '19년도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요?

A_ 방산시설의 설치에 스마트 공장 신축 자금 지원 등 관련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Q_ 방산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받은 세부 품목을 변경할 수 있나요?

A_ 가능합니다.

∵ 변경되는 세부 품목이 방산육성자금 융자 추천 시의 과제에 적용되고, 기술·사업 타당성이 충족(관련 기관 검토 결과 제출)되면, 융자 추천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_ 업체가 방산육성자금 융자 추천 금액을 모두 대출받지 못한 경우, 잔여액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_ 융자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않고 대출 완료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청이 차기 연도 융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문의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 2079-6474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진흥팀 02) 3270-6034

23 국방중소기업 경영정책자금 지원사업

1.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란?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에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을 유치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 관련 근거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고시)」

■ 자금융자 대상 사업

- **연구개발** : 업체자체투자 군수품 연구개발
  * 연구개발 전용건물(시설, 장비) 비용 지원 가능
- **시설 설치** :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스마트공장 구축 등)의 설치 · 이전 · 개체 등
  * 임차금 지원 가능
- **계약 생산** :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생산비용(재료비, 노무비)

■ 지원 대상

- **연구개발 · 시설 설치**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중 군수품 매출액 비율이 5% 이상인 업체
- **계약 생산** :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및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1 · 2차 협력업체의 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이 필요한 업체
  * 방위사업청, 국방부(직할부대 · 직할기관 포함), 육 · 해 · 공군

CHECK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 지원 내용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구분	융자 기간	융자사업자 부담 금리
연구개발 자금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기업대출 평균금리 4.0% 이상 시 (고정금리 적용) / 0.5% * 기업대출 평균금리 4.0% 미만 시 (변동금리 적용) / 기업 대출 평균금리의 12.5% 부담 * 기업대출 평균금리 4.0% 이상 시 (고정금리 적용) / 0.5%
국방 중소기업 운영 및 군수품 생산시설 설치 등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계약업체 생산	5년 (5년 분할 상환)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접수 기간** : '19년 2월
  * 가용 예산에 따라 추가 공고 예정
- **제출**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문의처**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방위산업진흥회
  * **협약은행** : HN농협, KDB산업은행
- **제출 서류**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 신청서
- **세부 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한국방위산업진흥회(www.kdia.or.kr)

■ 사업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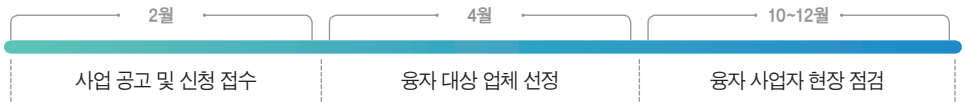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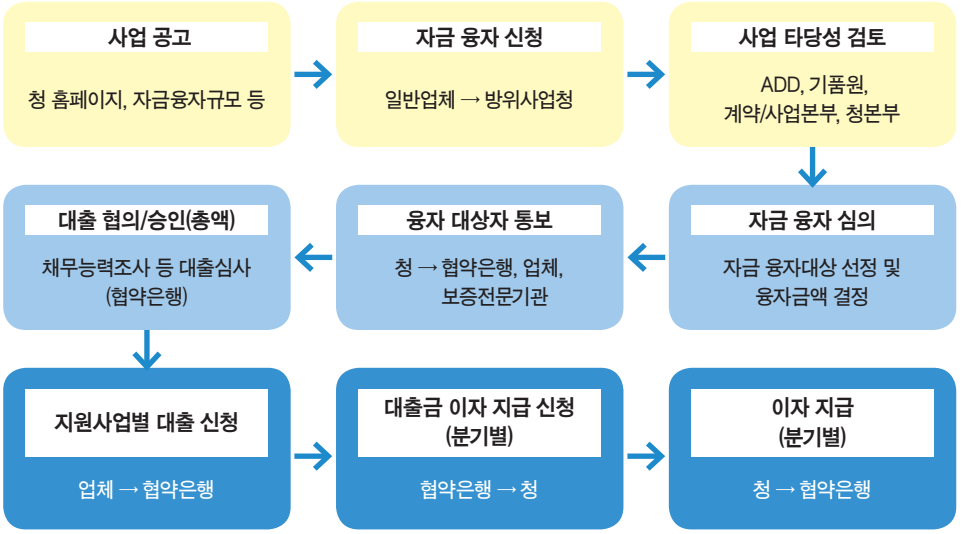

3. 지원 규모

구 분	'17년 융자추천액(업체수)	'18년 융자추천액(업체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588억 원(54개)	568억 원(51개)

4. 자주 묻는 질문

Q_ '19년도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요?

A_ 군수품 생산시설의 설치에 스마트 공장 신축 자금 지원 등 관련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Q_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_ 불가능합니다.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방산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방산 분야 종사 기업 및 전력지원체계 생산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방산업체는 방산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Q_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_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_ 다년도 계약을 한 경우, 생산자금을 한 번에 소요 신청할 수 있나요?

A_ 불가능합니다.

∵ 단년도 예산사업이므로, 다년간에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도 연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소요 신청해야 합니다.

Q_ 방위사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중복해서 쓸 수 있나요?

A_ 불가능합니다.

∵ 같은 개발과제 또는 사업으로는 중복해서 쓸 수 없으며 하나의 정책자금만 가능합니다.

Q_ 방산 시설 설치 관련 사옥 이전(증축)도 포함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사옥 이전 형태가 임차도 가능한가요?

A_ 시설 관련 증축도 지원 대상입니다. 임차의 경우, 임차보증금도 가능합니다.

Q_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을 10억 원 지원받아 시설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공장 증축을 위해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

A_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다만,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단년도 사업이므로 '19년 소요자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 2079-6476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진흥팀 02) 3270-6034

24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1.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란?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 참고 규정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6조(경영합리화와 기술향상)

■ 지원 규모

- **전체 예산 :** 6억 원('19년도)
  * '18년 **지원 실적 :** 총 5.4억 원, 44개 중소기업 지원

■ 지원 대상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 참여 희망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세부 지원 대상

- 방산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개발 · 개량한 중소기업
-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분야 참여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업체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75%
- 컨설팅 지원 분야

구 분	세부내용
기술	•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부품 국산화 개발 • 공정 · 품질 · 설비개선,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규격화 · 목록화,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 협력 • 군용총포 · 도검 · 화약류 안전 관리,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
경영	• 국내 · 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 방산원가 관리 등
행정	• 방산조달, 계약 절차 · 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지원사업 신청, 제안서 등 행정 서류 작성 지원 등
법률	•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기술 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관련 법률 상담

* 방산 분야 참여 확대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이 있는 과제여야 하며, 컨설팅 희망 사항에 맞게 맞춤형 주제를 설정한 후 신청 가능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사업 공고** : '19년 3월(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등)
- **접수 기간** : '19년 3월 중(예정)
- **제출처** : 컨설팅 운영기관
- **제출 서류** :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

■ 사업 일정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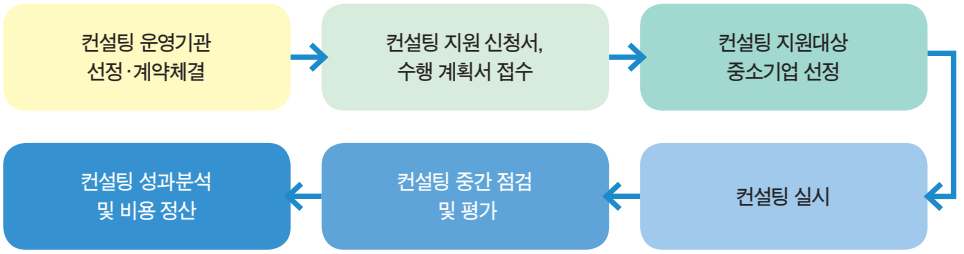

3. 성과 우수 사례

㈜경성엠티 / 기술컨설팅('17), 경영컨설팅('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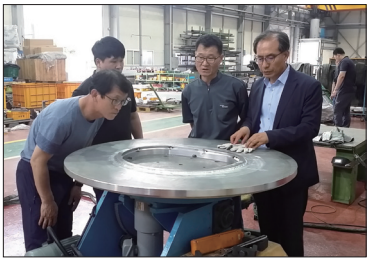

- ㈜경성엠티는 차륜형장갑차 차장 선회 Hatch, 연료탱크 등 방산용 알루미늄 합금 용접구조물을 생산하는 방산 중소기업
- 용접구조물 제작공정 및 품질 개선을 목표로 기술컨설팅 신청('17년), 공장 운영프로세스 개선 및 고객 · 사업 다각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신청('18년)
- 용접 기술 · 검사 자체 기준서 마련, 핵심 인력 교육 등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 확립 및 불량률 저감(출하검사합격률 100%), 생산성 향상(면적 대비 +16.7%), 전년대비 17% 매출액 증가(방사청 신규 사업 수주 2건, 16.4억 원) 및 10% 이상 경비 절감하여 경영 효율화 달성

㈜월드텍 / 기술컨설팅('18)

- 지능형 영상처리 기술 전문 업체인 ㈜월드텍은 방산 분야의 신규 진입을 희망하여, 당사의 보유 기술 무기체계 적용 방안에 대한 기술컨설팅을 신청
- 방산관련기관 · 방산업체에 기술세미나를 통해 군의 요구사항을 식별, 군용지능형영상분석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감시정찰 무기체계와 주둔지 과학화경계 분야 등에 적용할 수 있음을 검증받았음
- 방산전문 인력 교육 · 양성(3명), 전문연구기관 · 소요제기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및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방위산업 진입로를 확보하고 사업화 기반을 마련

4. 자주 묻는 질문

Q_ 국방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인데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A_ 명확한 목표 없이 컨설팅을 받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소재지 인근 국방벤처센터를 통해서 전반적인 안내를 받고 해당 기업 보유 기술 등을 식별 후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Q_ 전년도에 컨설팅 지원받았던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_ 기본적으로, 컨설팅 신청 분야가 전년도와 상이할 경우 가능합니다.

A2_ 단, 전년도에 지원받은 분야이더라도, 심화 지원이 필요한 '기술 컨설팅'일 경우 최대 3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 2079-6446

25 방산 전문 인력 양성 지원사업

1. 방산 전문 인력 양성 지원사업이란?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방산 관련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 분야별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지원 내용

- **교육비용** : 전액 국가지원 (무상참가)
- **교육 과정** : 무기체계 원리 등 13개 과정

교육과정	정원	기간	횟수
방위산업 기본 과정	35명	3일	5회
국방표준화, 방산원가관리, 방산계약 과정	30명	2일	4회
방산프로젝트 관리, 무기체계 원리 과정	30명	2일	3회
종합군수지원(ILS), 체계공학(SE), 방산시험평가, 상호 운용성 및 S/W개발관리, 무기체계 연구개발 관리, 국방소요기획 및 예산 과정	30명	2일	2회
방산수출 과정	30명	2일	1회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신청 방법** : 협약 체결 후 교육 참여
- **협약 기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제출 서류** : 협약서 및 일반 현황

  * 작성 양식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http://edu.kdia.or.kr) 참조

■ 처리 절차

교육참여 문의	협약신청	협약 체결	교육참가
협약서 작성 안내 (전략 분야 인력양성)	협약서(2부) 일반 현황(1부) 작성 및 제출	협약기업 HRD-net 등록 (방위산업진흥회)	산업인력공단 승인

3. 자주 묻는 질문

Q_ 교육 장소는 어디인가요?

A_ 한국방위산업진흥회(마포역 2번출구, 성우빌딩 13층)

Q_ 교육 참가생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A_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 교육 자료, 중식, 다과, 문구류 일체가 지원됩니다.

문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교육센터
02) 3270-6081

■ 2019년 방위산업 전문 교육 일정

과목	세부내용	일정
방위산업 기본	• 방위산업 및 사업 관리 직무지식 함양 - 개요/소요 기획 절차, 소요 제기 및 결정, - ROC/전력화 지원 요소, 진화적 ROC - 국방예산체계, 국방중기/연도예산편성, 실습, 방산육성지원	3.6.~8. 4.24.~26. 6.19.~21. 9.4.~6. 11.13.~15.
프로젝트 관리 (PM)	• PM 소개 및 업무 절차 교육 - PM 개요, PM 개념 및 이론, 범위/시간/원가/품질 관리 및 절차 - WBS 작성 실습, 일정표 작성 및 성과 관리 실습	3.14.~15. 6.25.~26. 11.5.~6.
종합군수지원 (ILS)	• ILS 업무 수행 절차, 군수지원/신뢰성 분석 - ILS 요소개발 관리/절차, RAM 업무 및 활용 - 군수지원분석/LOADER-2, 창정비요소개발/CSP/전자식기술교범	4.2.~3. 7.2.~3.
방산원가 관리 중급	• 방산원가 관리에 대한 심화 과정 - 국방원가관리체계, 원가비목별계산 실무 - 원가심사 사례Ⅰ, 원가심사 사례Ⅱ, 방산제비율 산정/작성 요령	3.21.~22. 5.16.~17. 7.9.~10. 10.22.~23.
무기체계 원리	• 무기체계 적용 기술 및 발전 방향 이해 - 개요 및 지상무기체계, 해상무기체계 - 탐지자산/정밀유도무기, 신기술 군사적 응용	3.26.~27. 6.11.~12. 11.19.~20.
국방표준화	• 국방 목록 및 규격 정보체계 운용능력 배양 - 국방 표준정책 / 규정, 부품 국산화, 국방표준화 관리/ 규격서 작성 방법 - 국방목록화 업무/목록화 요청 방법, 국방표준종합시스템(KDSIS)	3.12.~13. 5.21.~22. 7.11.~12. 11.21.~22.
방산계약 실무	• 계약, 협상관련 법규, 업무 절차, 사후 관리 등 - 국방조달 업무 / 계약 실무, 계약 체결 및 이행 - 공공계약 법규 / 쟁점 사례, 방산계약/원가 주요 분쟁 사례, 물품 제조 / 구매계약 특수조건	3.19.~20. 5.23.~24. 7.4.~5. 10.15.~16.
체계공학 (SE)	• 체계공학 전문 지식 및 연구개발 관리 능력 향상 - 개념, 소요 기획 체계 및 절차, 체계공학 프로세스 -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 체계분석 및 통제 기법	5.28.~!29. 10.31.~11.1.

방산시험평가	• 무기체계 시험평가 전문 지식 및 관리 능력 향상 - 시험평가정책/절차, 무기체계시험평가 - 구매 무기체계시험평가, M&S시험/ 사이버보안시험평가	4.4.~5. 10.17.~18.
상호 운용성 및 S/W 개발 관리	• 무기체계 상호 운용성, S/W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법 - 상호 용성 개념, 기반 기술 표준, S/W 개발 관리 - S/W 신뢰성 시험, S/W 기술 문서 작성 / 실습	4.11.~12. 9.19.~20.
방산수출 전문	• 방산 수출입 전문 지식 함양 - 방산수출정책/지원제도,외국무기획득환경 및 정보, 수출절충교역전략/사례,국방마크인증활용/사례 - 정부방산수출허가제도, 권역별(아시아,중동,유럽)수출마케팅	4.16.~17.
연구개발 관리	• 체계 개발 단계의 개발 절차 이행 - 현궁 주장비 개발 및 시험평가, 현궁 ILS 개발 - 형상 관리 / 규격화, 수출, 전력화 지원 요소 개발	5.30.~31. 9.24.~25.
국방 소요 기획 및 예산	• 국방 소요 기획 및 예산 편성의 이해 -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소요 기획 업무 절차 - 국방 중기예산 및 연도 예산 편성 절차 이해	5.30.~31. 9.24.~25.

26 방산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1. 방산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란?

방위산업 분야의 중소 · 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관련 규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 지원 규모

- **'19년 예산 :** 2.4억 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중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2호에 따른 "대상 기관"
  -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산업체"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 지정업체
  - "대상 기관",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 업체의 협력업체
    *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지원을 할 수 없는 기업

- **휴 · 폐업 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

■ 지원 내용

- 방산 중소 · 중견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
  - 네트워크, 서버 및 PC 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
  - 출입 관리 등 물리적 대응 시스템
- **지원 규모 :** 총사업비의 최대 50%, 업체당 최대 4천만 원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사업 공고** : '19. 2월말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접수 기간** : 공고 후 30일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청 방법** : 사업 공고문 참조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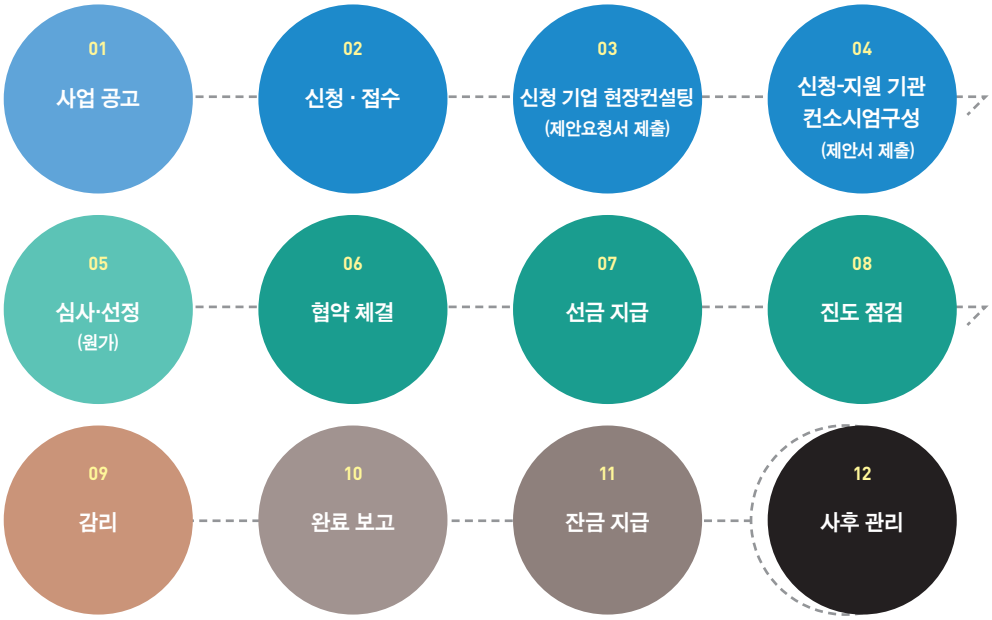

■ 사업 일정

3. 자주 묻는 질문

Q_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_ 정부지원금은 선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협약 체결 후 선금(정부지원금의 70%)이 지급되며, 최종 심의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후 잔금(정부지원금의 30%)이 지급됩니다.

■ 감리는 어디에서 수행하며, 감리 시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A_ 감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등록된 감리 기관 중 방위사업청에서 한 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수행합니다.

∵ 감리 시 확인 사항은 사업계획 대비 이행 현황, 실데이터 입력, 시스템 유지보수 활동, 장애조치 및 데이터 백업, 사용자/운영자 교육실시 및 시스템 운영 현황 등 입니다.

Q_ 최종 심의는 어떻게 하나요?

A_ 최종 심의는 방위사업청 기술보호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 최종 심의는 기술보호심사위원회에서 참여 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 제출 서류와 감리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 의무 사항 · 시행조치 이행 실적 등을 검토 · 확인하여, "성공" 또는 "실패"를 판정합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참조

문의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02) 2079-6976

MEMO

27 방산 중소 · 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1. 방산 중소 · 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이란?

방위산업 분야의 중소 · 중견기업 대상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산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통합보안장비란?

- 통합보안장비(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란, 방화벽, 침입 차단 및 방지시스템, 가상사설망 등 다양한 보안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보안솔루션을 말합니다.
- 통합보안장비를 적용함으로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 관제 서비스(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내부 유출 징후 파악) 가입 가능

■ 지원 규모

- 2019년 예산 : 1.1억 원(「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금)
-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분의 임차료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방산업체와 협력관계에 있을 것
  - 현재 통합보안장비를 임차하고 있거나, 단기간 내 임차 예정일 것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

- 휴 · 폐업 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인 기업

2. 업무 절차

■ 신청 · 접수

- **사업 공고** : 2019년 1월 및 수시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 **접수 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간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작성 후 E-mail(security2018@korea.kr) 송부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확약서, 통합보안장비 임차계약서(해당 시), 방산업체 지정서(해당 시)

  * 세부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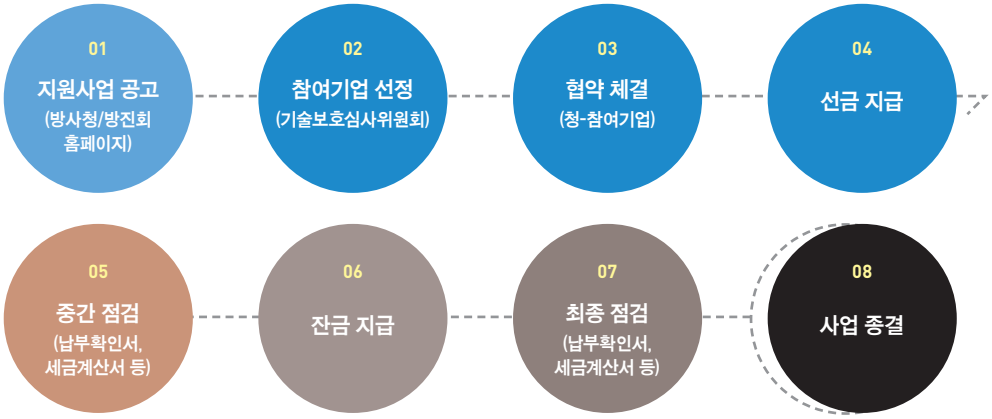

3. 선정 기준(우선순위)

1. 보안관제 운영 기간
2. 방산업체 지정 기업
3. 방위산업기술 보유 기업
4.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기업
5. 매출액 및 인력이 적은 기업(중소기업 우선 지원)

4. 사업 일정

1~2월	3월	7월	'20.2월
사업 공고	참여기업 선정, 협약서 체결, 선금 지급	중간 점검, 잔금 지급	최종 점검

* 예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공고 실시(수시)

5. 자주 묻는 질문

Q_ 방위산업체 지정 기업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_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軍,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납품하고 있거나 방위력 개선사업의 참여 업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_ 현재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_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 서류 제출 시 견적서 또는 가계약서 등 임차 의사 및 지원 규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Q_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없나요?

A_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선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02) 2079-6974

MEMO

2019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제 5 절 |

방위사업 정보공개

제 5 절

방위사업 정보공개

28 국방규격 공개

1. 국방규격 공개 제도란?

국방규격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수 조달시장에 신규 업체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의 우수한 상용품 도입을 위한 군수품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방규격이란?

- 군수품 조달에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 사항과 요구 필요 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 소프트웨어 기술 문서, 부품/BOM 목록 등으로 구성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26조(표준화)
- 「표준화 업무지침」 제25조의2(국방규격 공개)

■ 국방규격 공개 대상

-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S/W 기술 자료 등 원문 공개

■ 국방규격 공개 기준

-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 품목은 공개, 무기체계에 속하는 품목은 군사기밀 및 보안 우려가 없는 품목에 한해 공개하되, 전체공개(A), 업체공개(B), 내부공개(C), 비공개(X) 등급으로 분류하여 공개

■ 국방규격 관리 현황

('18. 12. 31. 부)

구 분	합 계	규격서	도면	QAR	포장제원표	SW자료
종수	1,010,175	7,986	926,968	31,563	42,174	1,484
비율	100%	0.8%	91.8%	3.1%	4.2%	0.1%

2. 열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규격 기술자료 등급별 분류 기준

등급분류 (부호)	공 개		비공개	
	전체공개(A)	업체공개(B)	내부공개(C)	비공개(X)
대 상	전국민	VPN 신청업체	국방관련기관	인가부서
수 단	인터넷/국방망	인터넷/국방망	국방망	오프라인
방 법	열람/제공	열람/제공	열람/제공	-

* 내부공개(C) 등급은 입찰 및 계약업체 등에 한해 국방규격 열람/제공
* VPN(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 전용망

■ 공개 국방규격 열람 방법

- 인터넷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의 국방규격 정보공개체계 및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일반국민** : 국방규격 정보공개체계 이용(로그인 없이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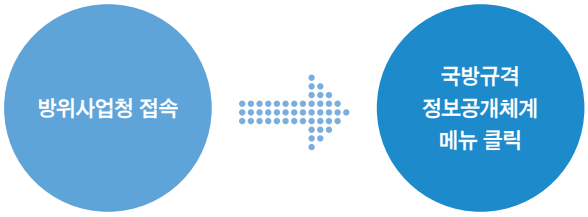

http://www.dapa.go.kr/

  - **군수업체**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이용(사용자 권한 등록 후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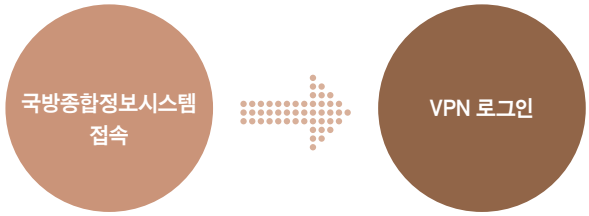

http://www.kdsis.dapa.go.kr/

3. 자주 묻는 질문

Q_ 국방규격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A_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규격화 업무가 시작됩니다.

∵ 무기체계 사업팀(IPT)은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규격화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평가와 전투용 적합판정 후, 최종 기술검토 결과 확인 및 반영하여 국방규격을 제정합니다.

Q_ 모든 군수품은 국방규격을 만들어야 하나요?

A_ 모든 군수품에 대해서 국방규격을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특별한 군사요구도가 없는 군수품은 국방규격 제정을 지양하며 유사 국방규격 및 민수규격(KS, 정부규격 등)의 활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_ 국방규격 공개 시 전체 공개 자료와 업체 공개 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A_ 일반국민 대상 전체공개 자료는 비무기체계 기술자료입니다.

∵ 업체 공개자료는 전체 공개자료와 군사기밀 및 보안에 우려가 없는 무기체계 기술자료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공개합니다.

Q_ 조달업체나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도 필요시 출력이나 다운로드가 가능한가요?

A_ 국방전자조달 회원이면 일반업체도 출력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도 조달청 나라장터 회원인 경우 방위사업청 전자조달 회원으로 가입해서 출력 및 다운로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
02) 2079-6595, 6588

MEMO

29 국방규격 개정

1. 국방규격 개정제도란?

신기술 및 안보환경 변화 반영 등 군수품 품질 개선을 위해 규격서, 도면 등 국방규격을 개정하는 업무입니다.

국방규격이란?

-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 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이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26조(표준화)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편 제1장(군수품 표준화)
- 「표준화 업무지침」 제61조(형상통제업무처리절차), 제67조(규격 개정)

2.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격개정 소요 제안	기술변경 제안서 및 관련 기술자료를 국방표준종합시스템으로 제출
↓	
규격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군 및 기품원 등 관계 기관 검토 포함
↓	
형상통제 심의회 개최	기술 변경 승인
↓	
군수조달(표준화)실무위원회 심의	규격 개정 확정

※ 모든 절차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으로 이루어집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Q_ 기술 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는 무엇입니까?

A_ 표준화 업무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377호)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술변경 제안서, 수정 전·후 국방규격 기술자료 일체, 제안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등을 국방표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Q_ 기술 변경하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A_ 제안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단, 제안서 타당성 검토, 관련 기관 검토, 기술 입증 시험 지연 등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시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표준화 업무지침 제61조제2항 참조

문의
계획지원부 국방규격팀
02) 2079-4671~4680

30 기술자료 및 견본지원 제도

1. 기술자료 및 견본 지원 제도란?

군수품 조달의 원활한 진행 및 현품구매 계약을 위해 각종 기술자료 및 소요 견본의 열람 및 대여 등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기술자료란?

- 기술자료(Technical Data)란 기술자료 묶음(Technical Data Package : TDP),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 TI) 및 기술규격서(Technical Specification : TS) 등 기술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것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기술자료 묶음(Technical Data Package : TDP)은 군에 소요되는 장비의 품목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 및 필수 사항을 제작 · 생산 및 조달에 적합하도록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 · 도면 · 소프트웨어기술자료 · 품질보증요구서(QAR) · 부품/BOM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견본이란?

-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긴급 수요로 규격을 제정할 여유가 없을 경우 또는 규격 적용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조달을 위해서 제공되는 현품을 말합니다.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26조(표준화)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편 제1장(군수품 표준화)
- 「표준화 업무지침」 제27조(국방규격 및 견본지원)

■ 기술자료 지원

- 열람 지원 대상
  ① 계약 전 입찰참가업체
  ② 무기체계 양산 단계 부품 국산화 개발신청 업체
  ③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위해 국방규격의 열람을 요청한 업체
  ④ 사전 공지된 조달 품목의 입찰 참여 희망업체

- 자료 제공 대상
  ① 계약 업체
  ② 획득기획국으로부터 사전 생산물량 확인을 받은 방산업체
  ③ 국방규격 정비 주관부서에서 양산 및 운용 단계에 있는 장비의 국방규격 개선 및 최신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체계 업체
  ④ 개발 관리 기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부품 국산화 개발 승인 업체
  ⑤ 부품 국산화 개발승인을 받은 업체가 국산화 개발 관리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⑥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대상인 시제품 검사 품목 또는 2단계 경쟁계약 품목의 입찰 참여 업체 중 해당계약팀장이 요구하는 경우

■ 견본 지원

- **입찰 업체** : 견본 열람 지원
- **계약 업체** : 견본 열람 및 대여 지원

■ 기술자료 및 견본 지원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술자료지원	23,136	23,002	20,186	29,056
견본지원	951	2,094	2,540	2,041

2. 신청 및 지원 절차

■ 기술자료 신청

국방표준종합시스템 (http://kdsis.dapa.go/kr) 로그인
- 규격 관리/규격 지원/규격 자료 요청/요청서 등록

↓

요청내용 입력
- **입력항목** : 신청인 인적사항, 중앙조달 계약번호, 공고번호
  * 입찰/계약 업체는 공고/계약번호로 해당 품목 입력/선택 가능
  * 사전 품보 업체는 해당 품목을 직접 입력한 후 승인 공문 첨부 필요

↓

국방규격 자료 확인
- ※ 신청 기술자료의 처리 과정은 "요청서 검색"으로 확인 가능
  처리 상태가 "승인"인 경우 국방규격 자료 확인 가능

■ 견본 지원 신청

국방표준종합시스템 (http://kdsis.dapa.go/kr) 로그인
- 규격 관리/규격 지원/견본 대여 신청/신청서 등록

↓

요청내용 입력
- **입력항목** : 업체/신청인 인적 사항, 중앙조달 계약번호, 공고번호
  - * 입찰/계약 업체는 공고/계약번호로 해당 품목 입력/선택 가능
  - * 사전품보업체는 해당 품목을 직접 입력한 후 승인 공문 첨부 필요

↓

견본열람 / 확인
- 방위사업청 담당자 요청서 확인 및 검토 후 지원 여부와 수령 일정 통보
- 견본 수령 통보일자 및 장소에서 결본 열람 및 대여

■ 열람 절차

국방표준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근거, 열람 시기 및 인원 명시

↓

방사청 장비규격팀 승인
- 신청서 검토 / 승인 후 열람 일정 및 장소 확정
  - * **국방규격 열람실(4개소)** : 과천청사 4동, 현장원가사무소(대전, 구미, 창원)

↓

방문 / 열람
- 국방규격 열람실을 방문하여 보안조치 후 규격자료 열람
  - * 휴대폰 보관, 열람대장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

복귀
- 휴대폰 수령 및 복귀

3. 자주 묻는 질문

Q_ 기술자료 및 견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A_ 신청 업체 및 계약 내용을 국방표준종합시스템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업체명, 신청자명, 계약번호, 신청 자료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Q_ 계약업체가 아닌 경우에 열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_ 계약업체처럼 국방표준종합시스템으로 신청하시고 과천청사 및 현장원가사무소의 규격자료열람실에서 열람하시면 됩니다.

∵ 입찰 희망 업체는 계약번호 대신 입찰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방산업체 추가 지정, 사전품보 업체 등은 추가로 관련 기관의 공문이 필요합니다. (표준화업무지침 제27조 제3항 참조)

문의

방위사업청 국방규격팀(기술자료) 02) 2079-4685

방위사업청 국방규격팀(견본지원) 02) 2079-4672

31 군수품 목록화 교육 지원

1. 군수품 목록화 교육 지원이란?

군수품 목록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군수품 목록 업무 요청 절차 및 방법, 요청자료 검토 등 기업 현장에서 업체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목록화란?

- 효율적인 군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나토목록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목식별 및 재고번호 부여 등 목록자료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제반과정
- **목록화 대상** : 군수품 중 반복적인 조달, 저장, 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물품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무형의 재화 포함)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27조(군수품목록정보)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편 제2장(목록화)
- 「표준화 업무지침」 제4장(군수품 목록화)

■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 방산 및 일반분야 기업 중 목록화 업무 지원이 필요한 업체
- **지원 내용** : 목록화 절차, 기술자료 사전검토,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목록화 요청서 작성법 등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참가 신청** : 연 2회(2월/7월 1일부터 10일까지)
- **지원 기간** : 매년 2월 ~ 11월
- **지원 장소** : 신청업체 사업장 또는 집합 장소
- **신청 방법** :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제출

  * 교육 지원 계획 공고 시 접수 메일 참조(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 처리 절차

(청 홈페이지, 방진회) (이메일 접수) (2월~11월)

3. 자주 묻는 질문

Q_ 방산업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_ 일반 기업도 가능합니다.

∵ 목록화 업무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예정인 업체 등 업무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_ 목록화를 요청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_ 목록화 비용은 없습니다.

∵ 목록화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Q_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어야만 목록화가 가능한가요?

A_ 목록화 대상은 군수품 중에서 반복적인 조달, 저장, 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목록화 시기는 연구개발사업은 국방규격 제정 완료된 이후이며, 국외구매사업은 기종 결정 이후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규격이 없는 상용품목도 목록화가 가능합니다.

Q_ 수입품에 대해서도 목록화가 가능한가요?

A_ 목록화가 필요한 수입품은 그 품목을 생산한 국가의 목록 부서로 목록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 방위사업청 군수정보관리팀을 통해 생산한 국가로 요청가능합니다.

Q_ 신규 목록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_ 국내 품목은 요청서 제출 후 목록화 요청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20근무일(공휴일 제외) 처리를 목표로 하며, 국외품목은 원생산국 요청 이후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군수정보관리팀
02) 2079-4654

MEMO

2019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제 6 절 |

방산 원가 및 계약 분야

제 6 절

방산 원가 및 계약 분야

32 국방조달 참여 지원

1. 국방조달에 참여하는 방법은?

국방전자조달 입찰 참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참가할 수 있으며, 국방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공인인증서 발급, 조달업체 등록, 품목 등록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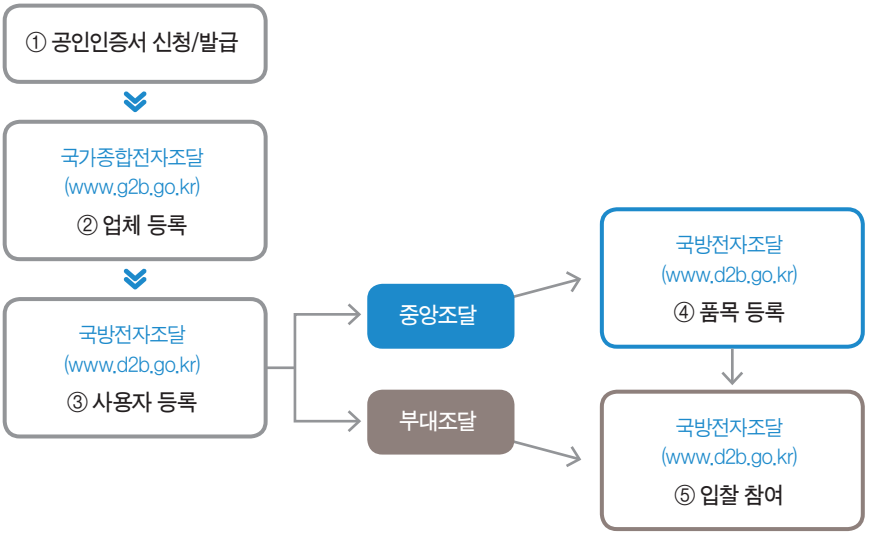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25조(조달 계획 및 방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편 조달 및 계약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 「조달원 관리지침」

■ 국방조달의 종류

- **중앙조달** :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국방조달
- **부대조달** : 각 군에서 집행하는 국방조달

■ 국방조달 참여절차

① 공인인증서 신청/발급 및 지문보안토큰 구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에 업체 등록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지문 등록, 공인인증서 등록 및 지문보안토큰 복사
③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
④ 중앙조달은 품목 등록 후 입찰 참여 가능
⑤ 국방전자조달 입찰 참여

2.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은 인증 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유료로 운용되고 있음

▶ **이동경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www.g2b.go.kr) - [e고객센터] - [정보서비스] - [관련 링크]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이동경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www.g2b.go.kr) - [이용자 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조달업체 등록 절차

1. 인증서 설치	공인인증기관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2. 조달업체등록 신청	조달업체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G2B시스템에 송신한다. * 필요한 구비 서류는 우편으로 가까운 지청에 송부
3. 사업자등록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G4C 통해 확인한다.
4. 구비 서류 확인	조달업체등록 신청서의 내용과 구비 서류를 확인한다.
5. 조달업체 등록승인	3, 4번이 확인되면 조달업체등록 신청서를 등록 · 승인한다. * 처리된 결과는 e-mail로 발송
6. 인증서 등록	조달업체정보가 승인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G2B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정보를 등록한 후, 로그인

3. 중앙조달과 부대조달의 참여 방법

■ 중앙조달

① 우선은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홈페이지에 조달업체 등록

②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 사용자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업체 등록 후, 다음 날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③ **중앙조달 참여**

-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는 것을『중앙조달』이라 하며 품목 등재 후 입찰 가능

*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사용자 등록 → 품목 등재 → 입찰 참가 신청 → 투찰/낙찰 → 계약 체결 → 납품 → 납품조서 제출 → 대금 통장 입금

※ 품목등재 방법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업체 등록 → 업체정보 관리 → 국내업체 관리 → 추가 정보 등록 → 추가 → 품목조회 → 품명조회 및 지정 →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 등재 신청 완료

■ 부대조달

① 우선은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홈페이지에 조달업체 등록

②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 사용자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업체 등록 후, 다음 날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③ **부대조달 참여**

- 각 군에서 집행하는 것을『부대조달』이라 하며 사용자등록 후 입찰 가능

* G2B업체 등록 →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 → 입찰 참가 신청(국내 조달, 시설공사) → 투찰/낙찰 → 계약 체결 → 납품 → 납품조서 제출 → 대금 통장 입금

4. 조달계획 조기공개란?

방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 입찰 및 생산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조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개 시기 및 공개 대상

- **조달 예비판단 정보 :** 연초(1월) → 익년 11월
- **조달 계획 확정 정보 :** 매년 3월 → 매년 1월
- **전력운영사업 조달 계획 전면 공개**

  * **2018년 공개 현황 :** 102,422건 중 102,152건 공개(99.7%)

  * **제외 대상 :** 암호장비, 탄약 등 보안 유지가 필요한 품목

■ 공개 방법 및 내용

- **공개 방법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공개(www.d2b.go.kr)
- **공개 내용 :** 품목/재고번호/군구분/부품번호/수량/단위/납기
  그 밖에 조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유찰수의 계약품목 전부 공개

경쟁입찰 품목 중 유찰수의 계약으로 조달되는 전 품목을 공개하여 신규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공개 대상

- **기간/대상 :** 최근 3년간('15년 ~ '17년) / 52,887종

부서명	내선번호	부서명	내선번호	부서명	내선번호
기동화력계약팀	4411~9	함정계약팀	4431~9	항공기계약팀	4441~9
지휘정찰계약팀	4451~9	유도무기계약팀	4421~9	일반장비계약팀	4511~9
통신장비계약팀	4521~9	급식유류계약팀	4531~9	물자계약팀	4541~9

※ 문의처(02-2079-내선번호)

6.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 시행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을 하여야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6. 11. 30. 시행)

군수품 무역대리업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 등록 절차

-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을 희망하는 분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친 후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에 들어오셔서 팝업창에 제공되는 등록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시스템에 업로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www.g2b.go.kr) /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CHECK

<등록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유효 기간 : 3년

- 등록증의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유효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오니 유효 기간 만료 3~1개월 전까지는 갱신등록을 하여야 되며, 미갱신 시에는 무효화 되어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갱신절차

■ 경과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업체 정보가 등록 관리되고 있는 자)

- 방위사업청에 이미 국내 소재 상사(업태가 공급업/무역대리점, 무역대리점인 경우에 한함)로 등록된 기업은 군수품 무역대리업을 기존에 영위하던 자로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제57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대표자 및 임원, 상호명, 소재지 및 연락처 등 등록정보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서식
  1.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
  2. 청렴서약서
  3. 보안서약서
- 등록자 직접 작성 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성명 등 고용 현황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
  5. 사업자등록증

  * 등록 신청자 동의 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위반행위 제재 사항

- **등록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
  - 중요사항(대표자 및 임원, 상호명,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 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 청렴서약서 위반
-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 무역대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7.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시행

군수품 무역대리업체가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통해 외국 기업과 중개수수료 등의 대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 기업은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7. 6. 21 시행)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 57조의4,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57조의3 및 별지26호(서식),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09조의2

■ 중개수수료 신고 세부 내용

- **대상 :** 사업 예산이 2백만 달러 이상인 무기체계 사업에 입찰한 외국기업이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 **신고일 :** 경제계약 - 입찰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수의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 중개수수료 변경 시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경신고
- **신고서, 변경신고서 접수 :** 사업팀 또는 국제계약부의 각 계약팀
- **신고서 서식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26조 참조
  * 방사청 누리집(www.dapa.go.kr) 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위반시 제재 사항

신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변경신고한 경우 등록 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8. 계약과정 조회 서비스 제공

■ 적격심사 진행과정 실시간 조회 서비스 제공

- 적격심사 진행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입찰참가자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을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ON-LINE으로 민원접수 및 입찰 참가 업체에 적격심사 진행 단계별 문자서비스(SMS) 제공합니다.

구분	민원명	비고
국방전자조달 시스템(d2b)	국내조달원 품목 등록	단계별 민원 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납품실적 증명서 발급	
	국외조달원(국내소재상사) 등록	
	적격심사 진행과정 조회서비스	

9. 자주 묻는 질문

Q_ 국방 조달 관련 설명회가 따로 있나요?

A_ 군수기업 조달원 간담회가 1/4분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세부 일정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참고)

∵ 2019년 조달계획과 관련법규 등 주요 변경사항 등을 공유하고 계약 간 업체의 건의 사항 수렴

Q_ 국방 조달과 정부 조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_ 주관기관, 전자조달사이트, 수요자/취급 품목 등이 다릅니다.

구 분	국방조달	정부조달
주관기관	방위사업청	조달청
전자조달 사이트	국방전자조달(d2b)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수요자	국방부 및 직할부대, 육 · 해 · 공군	모든 정부기관
취급 품목	방산 및 군용 장비, 피복, 급식 등	행정관서 운영 일반물자, 완제품 위주

Q_ 조달원 등록 절차 및 입찰/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_ 조달원 등록 절차(※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참조(청 홈페이지-업무 · 정책-행정규칙)

1) **국내조달원 :** 인증서 발급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서 업체 등록 → 다음날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에서 사용자 등록

2) **국외조달원**

① **국내소재상사 :** 인증서 발급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서 업체 등록 → 다음날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에서 사용자 등록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보안측정 적격판정 → 국방전자조달에서 국내소재상사 등록신청 → 등록 승인

② **국외소재상사 :** 등록신청서 제출 → 신용조사(나이스 D&B, 나토생산자참조목록 등에서 7일 소요) → 업체 등록

3) **군수품 무역대리업 :** 인증서 발급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서 업체 등록 → 다음날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에서 사용자 등록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보안측정 적격판정 → 국방전자조달에서 국내소재상사 등록신청 → 국내소재상사등록 승인 →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신청 → 결격사유(대표자 범죄경력 등) 조회 후 등록

A2_ 입찰 절차

1) **국내입찰 :**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에서 품목등재 → 입찰참가신청

2) **국외입찰 :**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에서 업체 등록 → 입찰참가신청

* 서류입찰인 경우 외국업체가 직접 서류 제출, 전자입찰인 경우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외국업체를 대리해 입찰참가신청

A3_ 계약 절차 : 입찰참가신청 → 투찰/낙찰 → 계약체결 → 납품 → 납품조서제출 → 대금입금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건별 상이한 내용이 있으므로 입찰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각 계약팀에 문의(02-2079-내선번호) 하시면 됩니다.

부서명	내선번호	부서명	내선번호	부서명	내선번호
기동화력계약팀	4411~9	함정계약팀	4431~9	항공기계약팀	4441~9
지휘정찰계약팀	4451~9	유도무기계약팀	4421~9	일반장비계약팀	4511~9
통신장비계약팀	4521~9	급식유류계약팀	4531~9	물자계약팀	4541~9

문의
방위사업청 조달기획팀
02) 2079-4175

MEMO

33 방산계약 제도

1. 방산계약 제도란?

■ **방산시장에서의 계약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계약상대자의 적절한 위험부담과 효율적 계약이행을 유도하고
- 방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산시장의 특성

-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로서 생산물량이 한정적
- 정부와 업체 간 쌍방독점
- 가격결정은 효율적 국방예산의 운영과 적정 원가에 따라 결정
-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신뢰성에 중점

■ **방산계약제도는 방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계약제도의 특례로 방위사업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산계약은 11가지 계약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적용대상은 방산물자 조달,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조달, 연구 또는 시험생산을 하게하는 경우입니다.**

관련규정 및 주요특징

구분	일 반 계 약	방 산 계 약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예정가격 작성기준	• 방위사업법 / 시행령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 시행세칙
주요 특징	• 경쟁계약의 원칙 • 확정계약의 원칙	•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 • 일반확정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 적용

2. 방산계약 절차

■ 방산계약은 원가산정결과(기초금액)에 근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방산업체와 수의 또는 지명경쟁에 의하여 체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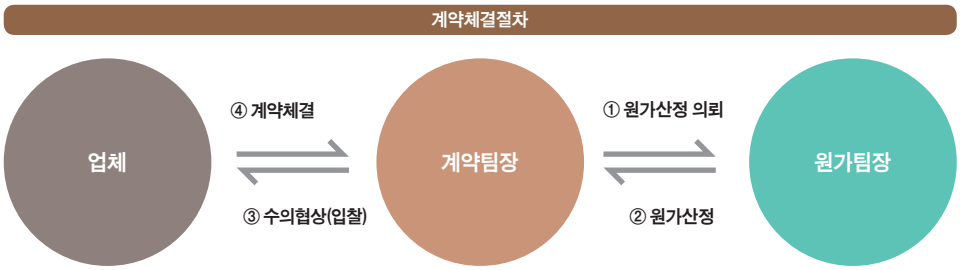

방산계약 절차

수행절차		부서
① 원가산정의뢰	• 조달판단서에 근거하여 원가팀에 원가 산정(예정가격, 기초금액) 의뢰	계약팀
② 원가산정	•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 원가계산 규정에 의하여 원가산정 → 계약팀 통보	원가팀
③ 계약금액 확정	• 계약 상대자와의 수의 협상 또는 입찰 실시	계약팀
④ 계약체결	•협상 또는 입찰 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	계약팀

■ **방산계약의 형태는 계약 상대자의 선정 방법, 계약 금액 확정 여부, 계약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방산계약 형태

구분	계약형태	방법
계약 상대자 선정 방법	경쟁계약	방산 지정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수의계약	특정 대상자를 상대로 협의
계약금액 확정 여부	확정계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결정
	개산계약	계약 금액 확정 곤란시 추후 정산
계약 이행 기간	단기계약	당해 회계 연도 이행 완료
	장기계약	계약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

3. 방산계약의 종류

■ **방산계약은 계약금액의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으로 구분하고 계약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종류

구분	개 념
일반확정계약	• 계약금액을 미리 확정 후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확정된 계약금액 지급
물가조정단가계약	• 과거계약 실적이 있는 경우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최근 실적 단가에 물가 등락율을 조정하여 계약금액 확정
장기옵션계약	•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 기간을 정하고 가격, 기간 및 해지 등의 조건을 설정

전체 및 부분개산이 가능한 계약의 종류

구분	개 념
중도확정계약	• 개산금액으로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원가 절감 유인계약	• 원가 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어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 등에 대해 목표원가와 목표이익을 정하고 계약이행 후 원가를 절감한 성과를 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비목 불확정계약	•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에 대해 계약 이행 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 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원가 절감 보상계약	• 계약 이행 기간 중 새로운 기술/공법 개발 등으로 원가 절감이 발생한 경우 원가 절감액 범위 안에서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
한도액계약	• 주요 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시 한도액을 설정하고,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요구하는 경우
성과 기반 계약	• 전투 준비 태세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후속군수지원에 관련된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이행 후에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한도액성과 계약	• 수리 부속품에 대하여 최대 5년 내에 한도액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4. 방산계약제도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계약이행 리스크가 높은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상한을 도입하고,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착 · 중도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무기체계 최초양산까지 지체상금 상한(10%) 도입

- 지체상금 과다로 인한 방산업체의 경영부담 완화와 국외 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초양산 사업까지 지체상금 상한 적용을 확대하고 이와 연계된 계약보증금도 20% 상한 적용토록 개선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 방산 착 · 중도금 지급 제한사유 개선

- 방위사업과 무관한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에도 착 · 중도금 지급이 가능토록 개선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4조

문의
방위사업청 계약제도심사팀
02) 2079-4187

MEMO

34 방산원가 제도

1. 방산원가계산 제도란?

■ 방산물자의 가격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국가가 특수규격, 주문생산 등의 특수성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물품·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방식으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 방산물자 등에 대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산업적 특성과 안보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원가계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법규

일반물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방산물자	• 방위사업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위사업청 훈령)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방위사업청 훈령)

방산원가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금액 결정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 유인

→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방위산업의 육성 · 발전

2. 방산원가제도 적용대상

■ 방산원가제도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 및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

3. 방산원가제도의 특징

■ **방산원가는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 **방산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일반물자의 원가를 계산할 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해당업체의 실제 노무비 단가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계산
- 사업 · 계약의 위험도와 업체의 경영노력 정도 등에 따라 보상율이 결정되며, 총원가 · 원가항목에 보상율을 곱하여 이윤을 계산
-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투자된 타인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을 원가에 포함(투하자본보상비)

■ **방산원가 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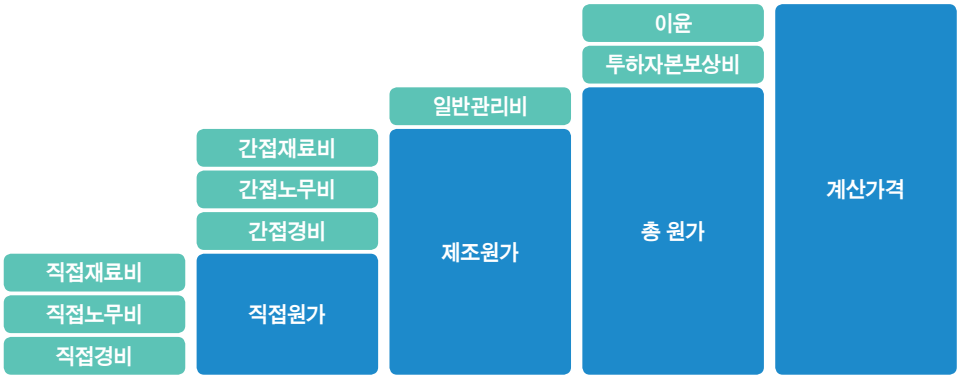

■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 · 방산수출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입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기존 수입가격을 원가로 인정
- 수출 관련 방산전시회 참가 및 해외 시험평가 비용을 원가로 인정
- R&D투자 및 수출액이 클수록 높은 이윤율 적용 등

■ **민수물자를 함께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민수와 방산으로 회계를 구분하여 방산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4. 방산원가 계산 절차

■ 방산원가 계산은 조달판단서의 접수(원가산정 의뢰)로부터 시작되며, 준비단계 · 자료조사단계 · 실시단계를 거쳐 계산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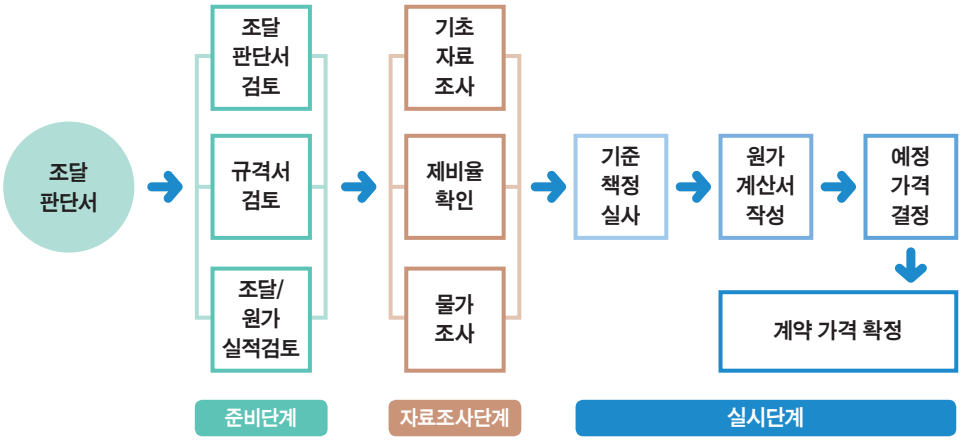

■ 방산원가 계산절차

준비 단계	조달판단서 검토	•원가계산의 구비요건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
	규격서 검토	•조달판단 요구조건과 규격과의 부합여부 검토
	조달/원가 실적 검토	•원가, 예정가격, 계약업체, 계약방법 등 최근 실적자료 검토
자료 조사 단계	기초자료 조사	•비목별 원가 기초자료 획득, 기준책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제비율 확인	•매년 업체별로 산정 통보된 제비율 자료 확인
	물가조사	•거래실례가격, 실적업체 구입가격, 정부고시가격 등 조사
실시 단계	기준책정 실사	•획득된 자료의 미비점 보완 및 검증이 곤란한 부분 현장실사
	원가계산서 작성	•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계산서 작성
	예정가격 결정	•계약수량,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 결정

5. 방산원가제도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원가부정시 체계업체에게 적정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정상적인 불량 노무량에 대해 합리적으로 원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방산원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협력업체 원가부정시 체계업체의 적정 책임 부담

-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해 직접책임이 없는 체계업체가 해당 사유로 향후 계약에서 이윤율을 일률적으로 2% 차감되는 불이익을 개선하여 직접책임 여부, 원가부정 규모, 자신신고 여부 등을 고려 차등 차감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3

■ 정상적인 불량 노무량에 대한 합리적 원가 인정

- 직접재료비의 정상 감손율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불량률과 관련된 노무량의 원가반영 규정이 없었으나, 정상적인 불량 노무량이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

문의
방위사업청 계약제도심사팀
02) 2079-4194

2019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제 7 절 |

방산업체 지원정책

제 7 절

방산업체 지원정책

35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제도

1.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제도란?

무기체계(일부 전력지원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 안정성이 중요한 군수물자의 엄격한 품질보증 가능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 「방위산업 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규정」

■ 지정신청 대상

방산물자

-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이 필요한 물자
-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 중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 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자

방산업체

-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춘 자

■ 지정 효과

혜택	의무
-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대상 - 「방위사업법」 정부우선구매 대상 - 방산원가 적용 등	- 생산시설 유지의무 - 주요방산물자 수출 시 사전승인 - 방산업체 매매·이전 시 사전 승인 - 방산물자의 의무적 공급

※ '19. 1월말 기준 91개 방산업체와 1,474개 품목의 방산물자가 지정되어 안정된 공급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산물자 지정신청 절차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합니다.

방산물자 지정요청 업체,IPT → 청(방위산업진흥국)	〈방위사업법 제34조/시행령 39조〉
↓	
관련기관 의견수렴 (청 ↔ 관련기관/부서)	**관련기관/부서 :** 국방부,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청내(IPT/계약부서)
↓	
종합검토 및 산업부 협의	(청 ↔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법 제34조〉
↓	
방산물자 지정(안)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방진국 → 계약관리본부) 〈방위사업법 제9조/시행령 15조〉
↓	
지정/미지정 통보	(청 ↔ 업체/관련기관)

■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 방산물자로 구분됩니다.

〈주요방산물자 : 제35조 2항에 해당하는 물자〉

- 총포류 및 그 밖의 화력장비
- 전차 · 장갑차 그밖의 전투기동장비
-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 · 열상장비
- 유도무기 / 항공기 / 함정 / 탄약
- 레이더 · 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 · 전자장비
- 전투공병장비 / 화생방장비 / 지휘 및 통제장비

-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 -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 및 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나 군의 수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과 군사전략상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품목
> - 외국에서의 수입이 제한되어 그 획득이 어려운 품목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내에 서의 개발 및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

* 근거 : 「방위사업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일반 방산물자 : 제35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

■ 방산업체 지정신청 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합니다.

〈방산업체 지정 요건〉

-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 , 품질 검사 및 기술인력 등 일정한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시설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보안요건은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측정합니다.

방산업체 지정신청
(업체 → 산업부)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

↓

방산업체 지정 협의요청
(산업부 → 청)
- 시설기준(시설/인력)은 청 의견 수렴 후 산업부 확정,
- 보안측정은 국방부에 요청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방산업체 지정(안)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 · 조정
- 보안측정 결과(청 ↔ 국방부)
- 산업부 생산시설 등 측정 결과

↓

방산업체 지정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청 → 산업부)
- 분과위 심의 결과 통보

↓

방산업체 지정서 발급
(산업부 → 업체)
- 산업부는 시설기준 측정 결과 및 보안요건 검토 후 방산업체 지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는 주요 방산업체,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는 일반 방산업체로 구분됩니다.

* 근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3.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제도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선진화를 통한 방산업체 경쟁조달 확대 및 신규업체의 방산 참여 유도를 위하여 방산물자 · 업체 지정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

01 경쟁가능한 방산물자 발굴위한 기반조사 추진

'16년에는 방산기반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생산능력을 갖춘 민간분야 우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앞으로 매년 기반조사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신설('16. 3. 31.)**
  * 방산 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 분석
- **방산기반조사 :** 기동, 화력, 함정, 항공분야 실시 중('18년)
  * 3년 주기로 전체 방산물자지정품목 전체에 대한 경쟁기반 조사

02 방산물자 정보공개 확대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 가능 방산물자 품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779개 품목)

* 청홈페이지(http://www.dapa.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방산물자 지정목록 중 대외공개 현황]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 - [방산정보] - [마케팅정보] - [방산물자 지정목록 배너]

4. 자주 묻는 질문

Q_ 방산물자 지정과 방산업체 지정은 무엇이 먼저인가요?

A_ 방위사업청에서 방산물자를 지정한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를 지정합니다.

Q_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모든 방산물자를 생산할 수 있다?

A_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물자를 방산물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은 지정된 물자에 대해서만 방산업체가 됩니다.

Q_ 방산물자 지정 신청은 언제 가능하나요?

A_ 방산물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체계 개발단계의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군수조달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방산업체] 02) 2079-6415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방산물자] 02) 2079-6419

MEMO

36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1.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란?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주관업체(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연구개발 단계부터 우수한 중소기업에 직접참여 우선기회를 제공하여 기술혁신 촉진과 무기체계 부품 · 소재의 진화적 기술 향상 가능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18조(연구개발) 제7항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적용대상 사업

-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우선선정 검토대상

- 무기체계 : 우선선정 품류에 포함되었거나 각 사업부서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발굴한 장비 또는 체계장비의 부품
- 핵심기술 : 차기 연도 착수예정인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 과제 중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과제

■ 품목지정 후보群인 「우선선정 품류」지정

- 품류 지정 기준
  - 중소기업의 참여 실적이 높거나 중소기업이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한 무기체계 완성 장비 여부 또는 완성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 기능을 발휘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여부 등

2. 품목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흐름도

품류 추천
- 사업 · 계약본부
- 기술혁신과
- 국과연, 기품원
- 방산협회

»

품류지정 타당성 검토 및 품류지정
- 방위산업진흥국

»

우선선정 품목지정 검토대상 선별
- 사업부서(IPT)
- 기술혁신과

품목지정 타당성 검토
- 국과연,기품원, 방산협회 등

»

품목지정 고시
- 방위산업진흥국

»

연구개발 사업추진 시 주관 중소기업 선정
- 사업/계약 부서

* 품류는 2년마다 정기 검토하고 있으며, 품목의 경우 각 무기체계 사업별 일정에 따라 연중 수시 검토

■ 사업 일정

2년 주기 (수시 보완)		연 중
우선 선정 품류 추천 및 관계 기관 검토	우선 선정 품류 지정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우선 선정 품목 지정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품목 지정 타당성 검토 및 고시

- 국과연, 기품원, 방산협회, 중소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품목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검토 내용** : 연구개발 필요 기술/인력 기준,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의 유사 품목 개발 실적 여부 등
  - **지정 기준** : 품목의 적용 분야가 상용 분야를 포함하며, 개발난이도가 적정하거나 일정 수준의 기술/시설 등을 갖춘 사례가 있는 경우

Q_ 중소기업으로 유예 중인 중견기업은 연구개발 주관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A_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_ 품목지정 시 기본대상 후보군인 '품류'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A_ 방산협회 또는 기품원 · 국과연, 방위사업청 내 사업 관련부서의 품류 지정 추천을 통해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지정될 수 있습니다.

Q_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1_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이고,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입니다. (즉, 입찰 공고 전)

A2_ 단, 입찰 결과 제안업체가 우선선정 지정 대상으로 추천한 품목(부품)이 있을 경우는 입찰 공고 이후 계약 체결 이전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 2079-6446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현황('10년~'18년)

	지정연도	분야(세부)	품 목 명	개발 구분
1	2010	지휘통제통신(정보보호체계)	실시간바이러스대응기술	핵심기술(시험개발)
2		화생방	소형이온탐지센서기술	핵심기술(응용연구)
3	2011	화력(탄약)	지능포탄용 EFP재료개발기술	핵심기술(응용연구)
4	2013	방호(탐지/경보장비)	화생겸용자동탐지기(신형화생방정찰차(차량형))	무기체계 연구개발
5		방호(탐지/경보장비)	생물독소분석식별기(신형화생방정찰차(차량형))	무기체계 연구개발
6		방호(탐지/경보장비)	방사능측정기(신형화생방정찰차(차량형))	무기체계 연구개발
7		방호(탐지/경보장비)	기상측정장비(신형화생방정찰차(차량형))	무기체계 연구개발
8		방호(탐지/경보장비)	생물시료수집기(신형화생방정찰차(차량형))	무기체계 연구개발
9		방호(탐지/경보장비)	종합보호장치(신형화생방정찰차(차량형))	무기체계 연구개발
10		방호(탐지/경보장비)	시료공급장치(신형화생방정찰차(차량형))	무기체계 연구개발
11		방호(탐지/경보장비)	시료채취장치(신형화생방정찰차(차량형))	무기체계 연구개발
12		방호(탐지/경보장비)	오염표시투척기(신형화생방정찰차(차량형))	무기체계 연구개발
13		방호(탐지/경보장비)	자동소화장치(신형화생방정찰차(차량형))	무기체계 연구개발
14		방호(탐지/경보장비)	화학탐지경보장비	무기체계 연구개발

	지정연도	분야(세부)	품 목 명	개발 구분
15	2014	방호(보호장비)	신형화생방보호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16		방호(제독장비)	신경작용제예방패치	무기체계 연구개발
17		화력(대구경)	보조동력장치 (K9자주포(성능개량))	무기체계 연구개발
18				
19		화력(대구경)	조종수야간잠망경 (K9자주포(성능개량))	무기체계 연구개발
20		함정(일반함정)	고밀도녹음기(구축함 TACM용)	무기체계 연구개발
		기타	분대 모의전투훈련체계	무기체계 연구개발
21		방호(대공무기)	적외선 검출기 (30mm 차륜형대공포)	무기체계 연구개발
22		방호(대공무기)	조종수 야간잠망경 (30mm 차륜형대공포)	무기체계 연구개발
23		방호(대공무기)	탄저장 장치(30mm 차륜형대공포)	무기체계 연구개발
24		방호(대공무기)	EMI필터 (30mm 차륜형대공포)	무기체계 연구개발
25		화력(연소탄)	적외선 차폐연막통	무기체계 연구개발
26	2015	감시정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해상감시레이더-II)	무기체계 연구개발
27		화력(유도무기)	열전지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무기체계 연구개발
28		화력(유도무기)	원격측정장비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무기체계 연구개발
29	2016	화생방	급속제독기술	핵심기술(시험개발)
30		기타	무정전 전원공급기 (광개토-III Batch-II 통합소나체계)	무기체계 연구개발
31		기타	무정전 전원공급기 (울산급 Batch-III 전투체계)	무기체계 연구개발
32	2017	화력	초소형 비축전지 (155mm정밀유도포탄)	핵심기술(응용연구)
33	2018	화력(함정탄)	밑마개 (76mm철갑고폭탄)	무기체계 연구개발
34		화력(함정탄)	신관몸체 (76mm철갑고폭탄)	무기체계 연구개발
35		화력(함정탄)	기폭회로하우징 (76mm철갑고폭탄)	무기체계 연구개발
36		화력(함정탄)	연결피니온 (76mm철갑고폭탄)	무기체계 연구개발
37		화력(함정탄)	감기피니온 (76mm철갑고폭탄)	무기체계 연구개발
38		화력(함정탄)	신관마개(76mm철갑고폭탄)	무기체계 연구개발
39		화력(함정탄)	전원부하우징(76mm철갑고폭탄)	무기체계 연구개발
40		화력(함정탄)	소켓절연체(76mm철갑고폭탄)	무기체계 연구개발
41		화력(함정탄)	기폭회로마개(76mm철갑고폭탄)	무기체계 연구개발
42		화력(함정탄)	전원부마개(76mm철갑고폭탄)	무기체계 연구개발
43		화력(함정탄)	액비축전지(76mm철갑고폭탄)	무기체계 연구개발

37 일반 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

1. 일반 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란?

무기체계 양산단계에서 구매하는 수입부품 중 국산화 개발소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 정부가 업체에 국산화 개발을 승인하고 개발 과제 성공 시 수의계약 체결, 수입가격 인정 등의 보상을 통해 정책적으로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연구개발의 절차 등)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장 제2절(부품 국산화 개발)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편 제5장(국산화)
-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지침」

■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종류 및 사업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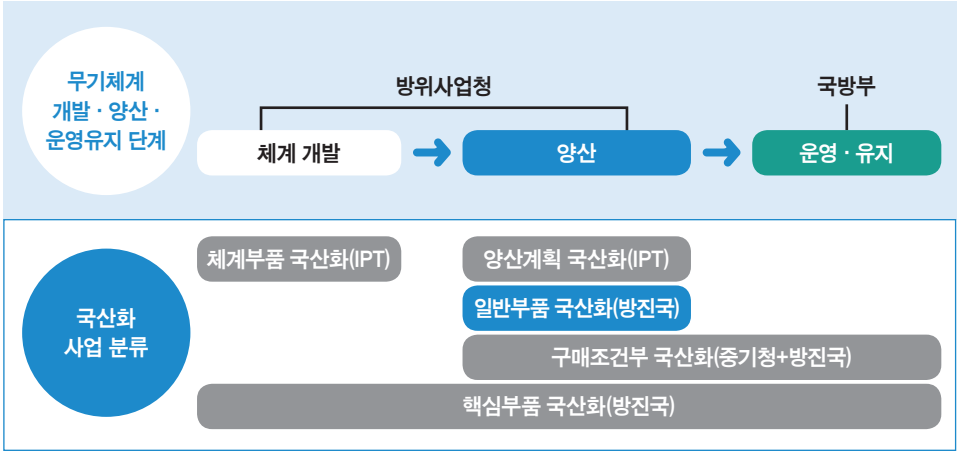

■ 지원 대상

- **대상 품목** : 양산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수입 부품
  * 단, IPT의 양산사업 계획에 포함된 품목은 제외
- **개발 업체** : 당해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유사품목 제조 경험이 있는 국내 업체

■ 지원 내용

- **개발 대상 품목 선정**
  - 업체 자체적으로 개발 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수시 신청 가능
    * 부품 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compas.dtaq.re.kr)
- **개발 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개발 관리 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
- **금융 지원** : 방산육성자금 이용 가능
- **개발 성공 시 혜택**
  -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에 대하여 수의 계약권 및 수입가격 인정(5년)

개발 대상 품목 선정 기준

- 수입대체효과/기술파급효과가 높거나 성능개량이 필요한 품목
- 부품의 단종이 예상되어 개발이 긴급한 품목
- 군에서의 운영 · 유지에 국산화가 불가피한 품목
- 원천 기술이 필요한 부품 및 소재
- 기타 정책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접수 기간** : 연중 수시
- **제출 서류** : 개발 소요 제기 품목 목록, 개발소요제안서, 개발계획서
  * 부품 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compas.dtaq.re.kr)

개발품목 결정
- 공고품목 또는 자체 신청 품목

» **개발승인 신청**
- 부품 국산화 정보체계

» **개발승인 심사**
- 국방기술품질원

부품 국산화 개발품목 승인
- 청 (방위산업진흥국)

» **개발과제 성공**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시험평가, 규격화 · 목록화 완료)

» **양산단계 참여**
- 수의계약, 수입가격 인정

3. 자주 묻는 질문

Q_ 부품 국산화 개발 승인 시 개발자금이 지원되나요?

A_ 직접적인 개발자금 지원은 없으나, 방산육성자금 융자가 가능하며 개발 성공 시 수의계약권 및 수입가격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 일반부품 국산화의 경우 직접적인 개발자금 지원은 없으나, 방산육성자금을 통한 개발자금 융자가 가능하며 개발 성공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은 수의계약 및 수입가격 인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_ 운영 · 유지단계의 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_ 운영 · 유지단계 부품 국산화는 국방부에서 주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팀(02-748-5685) 및 각 군 군수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군수사 개발지원과 042-616-6942
해군 군수사 개발지원과 055-549-1832
공군 군수사 생산관리 053-989-1657

Q_ 수입부품 목록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_ 업체 스스로 국산화 가능 품목을 식별하여 일반 부품 국산화 신청할 수 있도록 부품 국산화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에 수입부품 목록현황(15,500개 품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compas.dtaq.re.kr)

문의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 2079-6442 / 6473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 055) 751-5431, 5432

MEMO

38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제도

1.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제도란?

군수업체의 품질관리 기반강화 및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체의 품질경영체제를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DQMS :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 인증기준 : 국방규격 KDS 0050-9000,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29조의2(품질경영체체인증)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품질경영체체인증)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관리지침」(청 예규 제391호)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기품원 규정)

■ 대상 업체 및 신청자격

- **대상 업체**
  - 방산업체
  - 일반업체(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
  -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 업체(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
- **신청 자격**
  -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KDS 0500-9000)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한 기업
  -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또는 경영검토를 1회 이상 실시한 기업

■ 인증의 유효 기간 : 3년

-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유효 기간 만료 4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유효 기간 중에 연 1회 이상 사후 관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업체의 혜택(인센티브)

제 도	인증업체 혜택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 기술능력분야 평가 시 가점 - 일반품목: 1.0, 급식류: 0.7점
방산물자 원가계산시 이윤 가산	• 경영노력평가 시 10점 부여 ※ 총원가의 1% 이윤 가산
제안서 평가(무기체계, 양산단계)	• 인증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업체선정	• 업체선정 평가 시 가점 1.0%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 기업 육성대상 선정	• 업체선정 평가 시 가점 0.5%
DQ마크 인증심사	•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심사의 일부 면제
정부 품질보증활동	• 품질보증활동 일부 생략

2. 인증제도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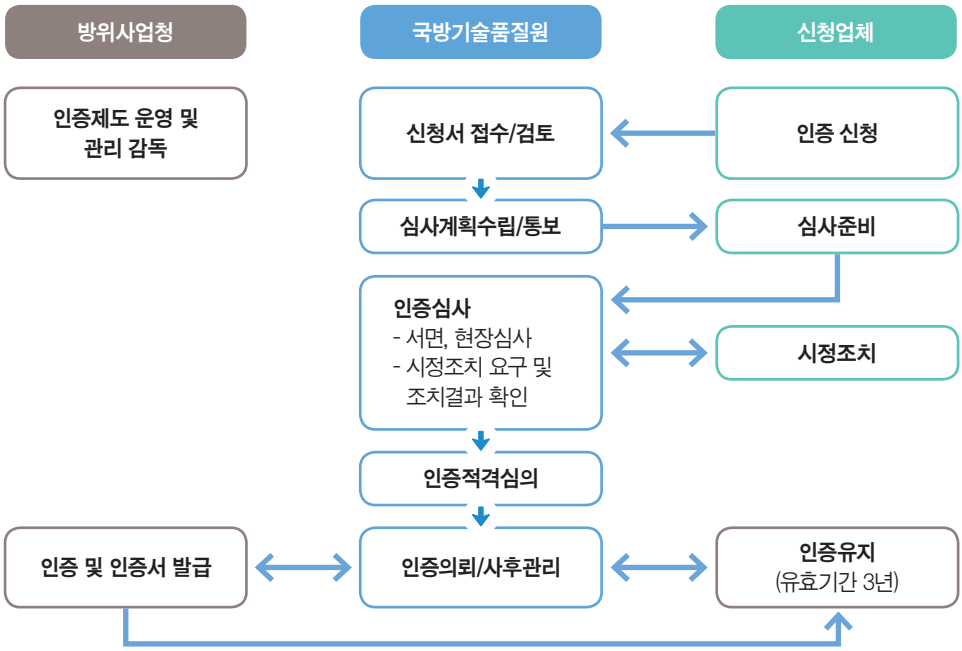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인증 신청서, 품질경영체제 문서, 기타 증빙자료 등
  - 공장단위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시)
- **신청방법** :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www.dtaq.re.kr)
  - '품질경영문서시스템' 가입후 업체 담당 전문센터(팀)으로 신청
- **심사수수료** : 20만 원/MD(부가가치세 10% 별도)
  - 업체의 종업원수에 따른 심사일수로 산정
- **소요기간** : 인증 신청 후 인증서 발급까지 약 7개월 소요

※ 신청서류 및 세부내용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www.dtaq.re.kr) 자료실 → 규정자료 → 국방품질경영체제(DQMS)인증업무 규정 참조

3. 인증제도 주요 개선사항

■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의 공신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급하던 인증서를 방위사업청에서 인증 및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국가공인 인증서의 자격 부여
- 인증 심사기관(국방기술품질원)과 인증기관(방위사업청) 분리

■ 인증 취소사유는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취소 사유를 방위사업법으로 규정
-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증정지제도 폐지

■ 인증심사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청 예규「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관리지침」에 인증 심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 기준 신설

4. 자주 묻는 질문

Q_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은 ISO 9001 인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A_ DQMS 인증 심사 기준은 국방규격 KDS 0050-9000으로, ISO 9001 요구사항(65개 항목)에 군수품 특성을 고려한 요구 사항(27개 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ISO 9001 인증과 달리 DQMS 인증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인증 심사를 실시하고 방위사업청에서 인증 및 인증서를 발급하는 국가 공인 인증입니다.

Q_ ISO 9001 인증업체의 경우, DQMS 인증 심사 시 혜택이 있는가요?

A1_ 한국인정지원센터(KAB)에 등록된 인증 기관으로부터 ISO 9001 인증을 획득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범위의 유사 정도에 따라 심사일수가 일부 단축될 수 있습니다.

A2_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ISO 9001 인증 기관으로서 DQMS 인증과 ISO 9001 인증 심사를 통합하여 1회로 실시할 수 있으며 통합심사 신청업체는 심사 업무량 및 심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Q_ DQMS 인증 심사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1_ 업체의 규모에 따라 심사 일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사업장 수, 시스템, 프로세스 및 제품의 복잡성에 따라 심사 기간이 30%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A2_ 예를 들어 종업원이 86~125명인 업체에서 최초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1단계(서면) 심사 1MD, 2단계(현장) 심사 8MD가 소요됩니다.

A3_ 자세한 심사일수는 청 예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관리지침」,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_ 인증 신청서 제출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문서시스템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_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www.dtaq.re.kr)에서 품질경영문서시스템 접속 및 자세한 회원가입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02) 2079-6849
국방기술품질원 품질인증팀 055) 751-5736

39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운용 제도

1.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운용 제도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방산물자 생산용 원자재를 필요시 방산업체에 대부 또는 판매하고(정부비축),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생산용 원자재를 비축할 때 소요되는 자금 등을 지원하는(업체비축) 제도입니다.

■ 관련 근거

정부비축

「방위사업법」 제45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업체비축

제55조(원자재의 비축)「방위사업법」 제38조(자금융자)

■ 지원 대상

- **대상 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 **대상 품목**

정부비축

정부가 비축 중인 방산물자용 원자재*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에서 확인 가능
※ 시스템 접속 → 민원 신청 → 방산업무 지원 → 비축 원자재

업체비축

가격이나 수급이 불안정한 방산물자용 원자재

■ 지원 내용

정부비축

방산물자 생산 등 필요시 비축된 원자재 무상대부

업체비축

방위산업육성자금(원자재비축)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지원하며, 대출금 이자비용을 정부가 지원
- 2년의 거치 기간에 원자재를 업체에 비축하고,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시 상환 금액만큼 비축원자재 사용
  * 대출금 이자비용을 정부가 지원(방산육성자금 지원사업 참고)

2.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접수

- 접수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정부비축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에서 신청
※ 시스템 접속 → 민원신청 → 방산업무지원 → 비축원자재 대부신청

업체비축

연중 방진회를 통해 신청 * 매 반기별(1~2월, 7~8월) 방진회를 통한 업체비축 수요조사 실시

- 제출 서류

정부비축

- 정부비축 원자재 대부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정부비축 원자재 대부사용계획서

업체비축

- 업체비축 원자재 비축수요 제기표 * 방진회 또는 방위사업청 원자재 담당부서(02-2079-6449)로 문의

■ 처리 절차

정부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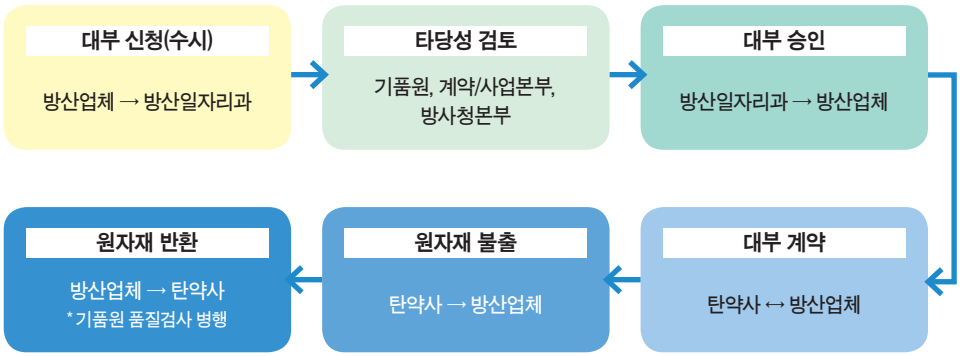

업체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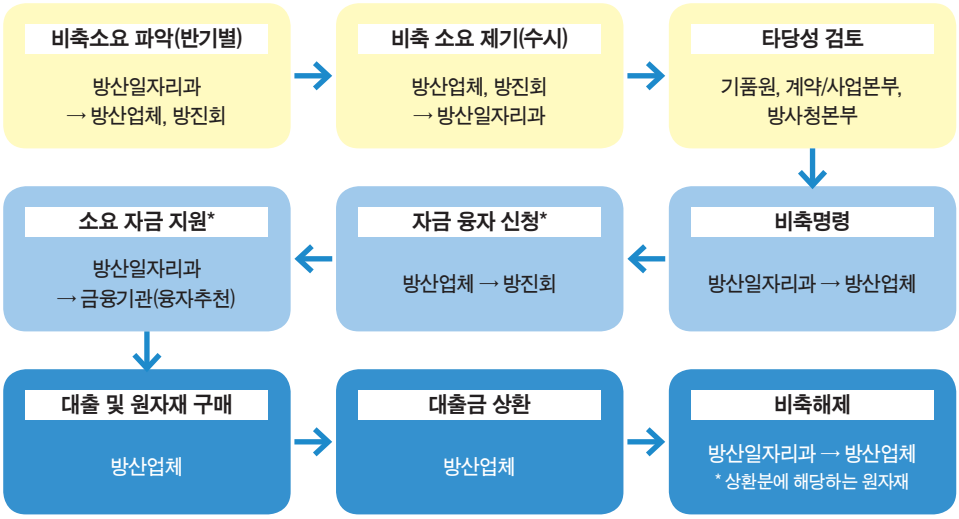

* 방산육성자금 지원사업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Q_ 업체 비축 원자재는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산협력 중소기업은 신청할 수 없는지요?

A_ 현재 법령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만 방산육성자금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원자재] 02) 2079-6449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육성자금] 02) 2079-6474

MEMO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